

第243回國會
(定期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9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12月8日(月)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견
2. 주요현안보고
가. 2004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관련조사결과
나. 2004학년도대입전형학생부CD제작배포관련
3.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4.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5.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
6.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현승일 의원 대표발의)
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
8.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현승일 의원 대표발의)
9.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10.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11. 教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
12. 大韓敎員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
13. 영재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14. 漢字敎育振興法案
15.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16.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윤경식 의원 대표발의)
17.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18.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안
19.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
20.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윤영탁 의원 발의)
21. 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안
22.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박창달 의원 대표발의)
23.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
24.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25. 獨學에의한學位取得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된案件

1.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견 4
2. 주요현안보고 4
가. 2004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관련조사결과
나. 2004학년도대입전형학생부CD제작배포관련
3.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김정숙 의원 대표발의)(김정숙·윤영탁·최병렬·정문화·이상득·

- 김찬우 · 도종이 · 이연숙 · 박시균 · 박주천 · 주진우 · 권오을 · 윤경식 · 안경률 · 임인배 · 이재선 · 이우재 · 김용갑 · 김부겸 · 홍사덕 · 김원길 · 김형오 · 양정규 · 김무성 · 권영세 · 김용균 · 남궁석 · 박명환 · 김명섭 · 이주영 · 서병수 · 박재욱 · 권태망 · 현승일 · 박희태 · 민봉기 · 이재창 · 이재오 · 맹형규 · 김성조 · 권기술 · 엄호성 · 강재섭 · 김종호 · 이부영 · 안상수 · 이해봉 · 강신성일 · 이강두 의원 발의) 6
4.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 · 권철현 · 김정숙 · 박재욱 · 박창달 · 설훈 · 엄호성 · 윤한도 · 이경재 · 이재오 의원 발의) 6
5.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김경천 · 권철현 · 권태망 · 박재욱 · 엄호성 · 윤경식 · 이경재 · 이규택 · 이재오 · 전용학 · 주진우 · 황우여 의원 발의) 6
6.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현승일 의원 대표발의)(현승일 · 이연숙 · 박재욱 · 안택수 · 양정규 · 박명환 · 김희선 · 장성원 · 이상득 · 이인기 · 서병수 · 정철기 · 도종이 · 백승홍 · 최병국 · 강창성 · 이해봉 · 정병국 · 권기술 · 김만제 · 김용갑 · 김황식 의원 발의) 6
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현승일 의원 대표발의)(현승일 · 허운나 · 현경대 · 박원홍 · 이경재 · 김정숙 · 박승국 · 심재권 · 이연숙 · 박재욱 · 강창희 · 안상수 · 하순봉 · 전용원 · 이승철 · 홍사덕 · 윤영탁 · 임종석 · 권기술 · 김동욱 · 이근진 · 백승홍 · 전용학 · 구종태 · 김병호 · 허태열 · 정문화 · 이원형 · 송훈석 · 이양희 · 박명환 · 민봉기 · 남궁석 · 김용학 · 이해봉 · 박종웅 · 장광근 · 오경훈 · 서병수 · 박헌기 · 이상득 · 천용택 · 안택수 · 유시민 · 김만제 · 정병국 · 강창성 · 이강두 · 윤경식 · 황우여 의원 발의) 6
8.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현승일 의원 대표발의)(현승일 · 이연숙 · 박재욱 · 이용삼 · 안택수 · 양정규 · 박명환 · 김희선 · 장성원 · 이상득 · 이인기 · 서병수 · 정철기 · 백승홍 · 최병국 · 강창성 · 하순봉 · 안상수 · 신경식 · 이해봉 · 이윤성 · 정병국 · 권기술 · 김만제 · 김황식 · 김용갑 · 이근진 · 강신성일 의원 발의) 6
9.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최영희 · 강숙자 · 고진부 · 김명섭 · 김상현 · 김성순 · 김운용 · 김태홍 · 김택기 · 박진 · 설송웅 · 오영식 · 유재규 · 장태완 의원 외 3인 발의) 6
10.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김형오 · 박재욱 · 박헌기 · 안상수 · 안택수 · 오경훈 · 오세훈 · 이근진 · 이용삼 · 이윤성 · 이인기 · 장성원 · 정병국 · 조용규 · 황우영 의원 발의) 6
11. 教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정몽준 의원 대표발의)(정몽준 · 김홍신 · 박원홍 · 장영달 · 허운나 · 김부겸 · 원희룡 · 권기술 · 김근태 · 윤두환 · 황우여 · 김희선 · 손희정 · 정대철 · 이낙연 · 남경필 · 김덕규 · 강신성일 · 강숙자 · 김태호 · 정병국 · 유재건 · 이연숙 · 김경천 · 박세환 · 강창성 · 최병렬 · 김효석 · 조용규 · 이규택 · 조부영 · 서청원 · 박상규 · 박창달 · 정재문 · 최영희 · 추미애 · 정문화 · 조희욱 · 이미경 · 안동선 · 박시균 의원 발의) 6
12. 大韓敎員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 · 윤두환 · 서청원 · 황우여 · 박혁규 · 이규택 · 권철현 · 이윤성 · 박창달 · 김정숙 · 김문수 · 윤경식 · 이방호 · 김명섭 · 정병국 의원 발의) 7
13. 영재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 · 이상희 · 박혁규 · 이규택 · 이윤성 · 권철현 · 김정숙 · 김문수 · 박창달 · 윤경식 · 황우여 의원 발의) 7
14. 漢字敎育振興法案(朴源弘 의원 대표발의)(박원홍 · 박주천 · 한화갑 · 고흥길 · 박진 · 유흥수 · 김덕룡 · 현경대 · 맹형규 · 조용규 · 김기춘 · 최연희 · 김종하 · 이재오 · 김용균 · 김용갑 · 하순봉 · 서정화 · 추미애 · 박승국 · 김정숙 · 강성구 · 최병국 · 강재섭 · 이재선 · 홍문종 · 서병수 · 오세훈 · 이승철 · 박헌기 · 원희룡 · 김학송 · 정문화 · 김락기 · 이원창 · 윤한도 · 박상규 · 이상배 · 박근혜 · 김무성 · 신경식 · 전용원 · 주진우 · 이양희 · 박재욱 · 허태열 · 김윤식 · 이방호 · 김용학 · 김만제 · 이해구 · 이상희 · 이주영 · 임진출 · 김문수 · 목요상 · 정형근 · 원유철 · 권태망 · 김원길 · 이경재 · 박종희 · 홍준표 · 김기배 · 서상섭 · 민봉기 · 엄호성 · 김찬우 · 이규택 · 강창성 · 김일윤 · 양정규 · 김광원 · 장광근 · 박시균 · 김진재 · 박세환 · 정창화 · 서청원 · 권기술 · 이윤성 · 안택수 · 김운용 · 윤여

준·강신성일 의원 발의)	7
15.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김경천·구종태·권기술·김근태·김덕규·김명섭·김성순·김성조·김성호·김영환·김용학·김태홍·김형오·김황식·남궁석·민봉기·박명환·박병윤·박상천·박상희·박인상·서상섭·심재권·안영근·안택수·유용태·이경제·이낙연·이양희·이재선·이재정·이종걸·정범구·조배숙·조성준·조한천·최명현·최선영·최영희·최재승 의원 발의)	7
16.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윤경식 의원 대표발의)(윤경식·이방호·박창달·심재철·오경훈·허태열·이규택·이해봉·김성순·이재오·전용학·이인기·손희정·김정숙 의원 발의)	7
17.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고홍길·권기술·권오을·권태망·김경천·김영진·남궁석·박재욱·신경식·신영균·원철희·이경제·이원창·이연숙·이재오·이해봉·임인배·장성원·정형근·주진우·현승일·황승민 의원 발의)	7
18. 국립대학운영에 관한특별법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고홍길·권태망·김경천·김영진·민봉기·박세환·박인상·박창달·서상섭·엄호성·이경제·이상희·이성현·이원창·이재오·이재정·이주영·임인배·윤영탁·전용학 의원 발의)	7
19.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김경천·권철현·김일윤·박창달·백승홍·윤영탁·이규택·이원형·이재오·최영희 의원 발의)	7
20.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윤영탁 의원 발의)(윤영탁 의원 외 9인 발의)	7
21. 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안(윤영탁 의원 대표발의)(윤영탁·정동채·송석찬·정갑윤·천용택·이협·김덕룡·정균환·김진재·이상희·김경천·이창복·최재승·송광호·함석재·오장섭·서상섭·김용갑·조배숙·박상희·윤경식·양승부·김성호·박명환·이주영·권철현·박헌기·이용삼·이상득·김무성·정문화·최병렬·김영선·장재식·김효석·한화갑·김덕규·박상규·정철기·강봉균·김찬우·정병국·박창달·전갑길·최용규·박진·심규철·이윤성·김학송·김락기·이인제·김근태·김원기·이해구·이방호·이정일·이재오·이연숙·심재권·조부영·정의화·엄호성·김원웅·강재섭·권오을·박승국·최명현·김홍일·김옥두·유재건·홍재형·김홍신·정우택·정진석·김학원·손희정·주진우·이낙연·이강래·김정숙·권태망·박재욱·유한열·강신성일·이원형·이인기·서병수·김택기·정장선·박인상·강인섭·안상수·고진부·박종완·홍문중·신경식·김정부·김일윤·허태열·안경률·장성원·유재규·양정규·김덕배·정범구·김경재·백승홍·이훈평·최연희·박근혜·강숙자·장태완·송영길·이강두·하순봉·박희태·정형근·김희선·김태홍·윤여준·정동영·남궁석·이호웅·김명섭·김종호·정몽준·강창희·김상현·목요상·안동선·김형오·현경대·박세환·이병석·김성조·전용학·박주선·유홍수·이상배·김광원·구종태·정세균·김종하·김용학·민봉기·정창화·박시균·김동욱·권기술·윤두환·김종필·송영진·이완구·김성순·안상현·김윤식·문석호·신영균·임인배·안택수·장영달·서정화·이양희·신영국·배기선·송훈석·홍사덕·최영희·김만제·조재환·배기운·강운태·이재선·박병석·이원성·김운용·김병호·이희규·김태식·김기춘·박종웅·도종이·한충수·김충조·김영환·나오연·최병국·정대철·김용환·조용규·윤한도·김기재·이경제·조한천·황창주·윤철상 의원 발의)	7
22.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박창달 의원 대표발의)(박창달·윤영탁·이규택·김정숙·이재오·권태망·김학송·박희태·조정무·박세환·권철현·강숙자·박종근 의원 발의)	8
23.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이규택·조부영·윤영탁·이재오·이해구·윤경식·김정숙·하순봉·김용갑·신경식 의원 발의)	8
24.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8
25. 獨學에 의한學位取得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8

(14시18분 개의)

○委員長 尹榮卓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丘冀盛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尹榮卓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 보고서채택의견과 주요현안보고 그리고 23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14시20분)

○委員長 尹榮卓 의사일정 제1항 국정감사결과 보고서채택의견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전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피감사기관들을 대상으로 직접 감사한 내용과 정부측에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해 전문위원실에서 서식에 맞추어서 초안을 작성하여 각 위원님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현안보고

가. 2004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관련조사 결과

나. 2004학년도대입전형학생부CD제작배포 관련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현안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尹德弘 교육부총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먼저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서 출제위원 선정, 유사지문 논란 및 복수정답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CD 제작·배포와 관련하여 입시생, 학부

모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게 되고 위원님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시고 특히 새해 예산안 심의 시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액보다 오히려 증액시켜 주시는 등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 전 직원은 이번 일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수능시험의 관리를 비롯한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교육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조사결과와 2004학년도 대입전형 학교생활기록부 CD 제작·배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金永植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조사결과, 2004학년도 대입전형 학생부 CD 제작·배포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조사 사항입니다.

관련경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5일 실시된 2004학년도 수능시험 후부터 유사지문 논란, 학원강사 출신 출제위원 참여문제, 지문 유출, 복수정답 논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11월 15일에 교육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바로 17일부터 26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진상조사단 구성 및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4일자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종승 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참고로 수능시험 지도·감독 체계를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독기관은 국무총리실로 되어 있고 수능시험 기본계획 수립 등

의 업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평가원에 시행 주관관을 위임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제위원 선정과정과 관련해 출제위원 추천과정에서 자격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과정이 누락되는 등 수능 출제위원 선정과정상 검증체제가 미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출제위원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인터넷 입시사이트 강사 전력 여부, 초빙교수 신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아울러 확인했습니다.

출제위원 156명 중 90명이 특정대학 출신으로 약 58%를 차지하고 있고 출제 유경험자가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고등학교 교사 출제위원 다수가 참고서를 집필한 사례를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출제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 출제위원 명단과 지문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혐의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사이트 강의 내용과 칸트 관련 지문의 유사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출제위원진의 유사지문 또는 중복문항에 대한 체계적 검증장치가 검토기간이 짧아서 충분히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수능 출제 및 시험 사후관리 관련사항입니다.

문항오류나 정오답 시비에 대한 처리과정이 적정하지 못했습니다. 최초 문제제기 시 연구원에만 의존한 판단과 해명으로 논란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고 논란 확대 이후 관련학회에 공식 질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전직 출제위원장 참고서 집필 논란 등 출제위원들의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사실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평가원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는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합동 수능출제·관리 개선기획단을 구성·운영해서 기획단 전체회의에서 향후 운영방안을 이미 논의했으며 12월 20일에 제기된 문제점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 구성·운영은 교육

인적자원부 차관이 단장이 되고 기획단에 2개의 분과위원회, 즉 출제위원선정 개선위원회, 출제체제 개선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12월 5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4학년도 대입전형 학생부 CD 제작·배포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NEIS 운영 기본방침과 관련해서 고3 학생에 대해서는 금년 입시에 NEIS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전교조가 대학정시모집 시 제공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일명 CD라고 합시다마는-이것을 전체 대학에 제공하고 있는 방식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아울러 학생 3인이 대입전형용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10월 25일자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 가처분신청이 11월 28일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입전형 CD 제작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12월 5일 현재 대부분이 완료되어 있고 제작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학교가 5개교입니다. 그리고 학생 일부가 제작되지 않은 학교는 22개교가 되겠습니다. 제작거부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2004학년도 대입전형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미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산자료 제공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고3 졸업예정자 전체의 대입전형용 CD를 제작하고 모든 대학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준해서 그 대학에 지원하지 않은 학생의 모든 학교생활기록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해서 내용을 바꾸어 대학별로 지원한 학생의 전산자료만 추출하여 해당 대학에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중앙센터를 설치하고 11개 시·도교육청에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해서 각 대학이 원서를 접수한 다음에 지원자 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인근 지정센터에서 해당 대학 지원자 자료만 추출해서 대입전형에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밑의 내용을 보시면 중앙 및 지역센터 설치기간은 12월 16일-그러니까 대학의 정시모집 ‘가’

군이 시작되는 날이 되겠습니다-12월16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중앙 및 지역센터 작업환경 구축 완료는 11일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16일까지 담당자 교육을 완료해서 실질적으로 정시 '가'군 모집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차질 없이 가동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된 대학의 입학처장, 교무처장 회의를 소집해서 나온 결론이 대입전형용 CD제공 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전형 일정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8페이지와 9페이지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는 2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3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3.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김정숙 의원 대표발의)(김정숙·윤영탁·최병렬·정문화·이상득·김찬우·도종이·이연숙·박시균·박주천·주진우·권오을·윤경식·안경률·임인배·이재선·이우재·김용갑·김부겸·홍사덕·김원길·김형오·양정규·김무성·권영세·김용균·남궁석·박명환·김명섭·이주영·서병수·박재욱·권태망·현승일·박희태·민봉기·이재창·이재오·맹형규·김성조·권기술·엄호성·강재섭·김종호·이부영·안상수·이해봉·강신성일·이강두 의원 발의)
4.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권철현·김정숙·박재욱·박창달·설훈·엄호성·윤한도·이경제·이재오 의원 발의)
5.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김경천·권철현·권태망·박재욱·엄호성·윤경식·이경제·이규택·이재오·전용학·주진우·황우여 의원 발의)
6.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현승일 의원 대표발의)(현승일·이연숙·박재욱·안택수·양정규·박명환·김희선·장성원·이상득·

이인기·서병수·정철기·도종이·백승홍·최병국·강창성·이해봉·정병국·권기술·김만제·김용갑·김황식 의원 발의)

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현승일 의원 대표발의)(현승일·허운나·현경대·박원홍·이경제·김정숙·박승국·심재권·이연숙·박재욱·강창희·안상수·하순봉·전용원·이승철·홍사덕·윤영탁·임종석·권기술·김동욱·이근진·백승홍·전용학·구종태·김병호·허태열·정문화·이원형·송훈석·이양희·박명환·민봉기·남궁석·김용학·이해봉·박종용·장광근·오경훈·서병수·박헌기·이상득·천용택·안택수·유시민·김만제·정병국·강창성·이강두·윤경식·황우여 의원 발의)
8.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현승일 의원 대표발의)(현승일·이연숙·박재욱·이용삼·안택수·양정규·박명환·김희선·장성원·이상득·이인기·서병수·정철기·백승홍·최병국·강창성·하순봉·안상수·신경식·이해봉·이운성·정병국·권기술·김만제·김황식·김용갑·이근진·강신성일 의원 발의)
9.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최영희·강숙자·고진부·김명섭·김상현·김성순·김운용·김태홍·김택기·박진·설송용·오영식·유재규·장태완 의원 외 3인 발의)
10.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김형오·박재욱·박헌기·안상수·안택수·오경훈·오세훈·이근진·이용삼·이운성·이인기·장성원·정병국·조웅규·황우영 의원 발의)
11. 教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정몽준 의원 대표발의)(정몽준·김홍신·박원홍·장영달·허운나·김부겸·원희룡·권기술·김근태·윤두환·황우여·김희선·손희정·정대철·이낙연·남경필·김덕규·강신성일·강숙자·김태호·정병국·유재건·이연숙·김경천·박세환·강창성·최병렬·김효석·조웅규·이규택·조부영·서청원·박상규·박창달·정재문·최영희·추미애·정문화·조희욱·이미경·안동선·박시균 의원 발의)
12. 大韓教員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윤두환·서청원·황우

여·박혁규·이규택·권철현·이운성·박창달·김정숙·김문수·윤경식·이방호·김명섭·정병국 의원 발의)

13. 영재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이상희·박혁규·이규택·이운성·권철현·김정숙·김문수·박창달·윤경식·황우여 의원 발의)

14. 漢字教育振興法案(朴源弘 의원 대표발의)(박원홍·박주천·한화갑·고홍길·박진·유홍수·김덕룡·현경대·맹형규·조웅규·김기춘·최연희·김종하·이재오·김용균·김용갑·하순봉·서정화·추미애·박승국·김정숙·강성구·최병국·강재섭·이재선·홍문종·서병수·오세훈·이승철·박헌기·원희룡·김학송·정문화·김락기·이원창·윤한도·박상규·이상배·박근혜·김무성·신경식·전용원·주진우·이양희·박재욱·허태열·김윤식·이방호·김용학·김만제·이해구·이상희·이주영·임진출·김문수·목요상·정형근·원유철·권태망·김원길·이경재·박종희·홍준표·김기배·서상섭·민봉기·엄호성·김찬우·이규택·강창성·김일윤·양정규·김광원·장광근·박시균·김진재·박세환·정창화·서청원·권기술·이운성·안택수·김운용·윤여준·강신성일 의원 발의)

15.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김경천·구종태·권기술·김근태·김덕규·김명섭·김성순·김성조·김성호·김영환·김용학·김태홍·김형오·김황식·남궁석·민봉기·박명환·박병윤·박상천·박상희·박인상·서상섭·심재권·안영근·안택수·유용태·이경재·이낙연·이양희·이재선·이재정·이종걸·정범구·조배숙·조성준·조한천·최명현·최선영·최영희·최재승 의원 발의)

16.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윤경식 의원 대표발의)(윤경식·이방호·박창달·심재철·오경훈·허태열·이규택·이해봉·김성순·이재오·전용학·이인기·손희정·김정숙 의원 발의)

17.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고홍길·권기술·권오을·권태망·김경천·김영진·남궁석·박재욱·신경식·신영균·원철희·이경재

·이원창·이연숙·이재오·이해봉·임인배·장성원·정형근·주진우·현승일·황승민 의원 발의)

18.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고홍길·권태망·김경천·김영진·민봉기·박세환·박인상·박창달·서상섭·엄호성·이경재·이상희·이성현·이원창·이재오·이재정·이주영·임인배·윤영탁·전용학 의원 발의)

19.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김경천·권철현·김일윤·박창달·백승홍·윤영탁·이규택·이원형·이재오·최영희 의원 발의)

20.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윤영탁 의원 발의)(윤영탁 의원 외 9인 발의)

21. 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안(윤영탁 의원 대표발의)(윤영탁·정동채·송석찬·정갑윤·천용택·이협·김덕룡·정균환·김진재·이상희·김경천·이창복·최재승·송광호·함석재·오장섭·서상섭·김용갑·조배숙·박상희·윤경식·양승부·김성호·박명환·이주영·권철현·박헌기·이용삼·이상득·김무성·정문화·최병렬·김영선·장재식·김효석·한화갑·김덕규·박상규·정철기·강봉균·김찬우·정병국·박창달·전갑길·최용규·박진·심규철·이운성·김학송·김락기·이인제·김근태·김원기·이해구·이방호·이정일·이재오·이연숙·심재권·조부영·정의화·엄호성·김원웅·강재섭·권오을·박승국·최명현·김홍일·김옥두·유재건·홍재형·김홍신·정우택·정진석·김학원·손희정·주진우·이낙연·이강래·김정숙·권태망·박재욱·유한열·강신성일·이원형·이인기·서병수·김택기·정장선·박인상·강인섭·안상수·고진부·박종완·홍문종·신경식·김정부·김일윤·허태열·안경률·장성원·유재규·양정규·김덕배·정범구·김경재·백승홍·이훈평·최연희·박근혜·강숙자·장태완·송영길·이강두·하순봉·박희태·정형근·김희선·김태홍·윤여준·정동영·남궁석·이호웅·김명섭·김종호·정몽준·강창희·김상현·목요상·안동선·김형오·현경대·박세환·이병석·김

성조 · 전용학 · 박주선 · 유홍수 · 이상배 · 김광원 · 구종태 · 정세균 · 김종하 · 김용학 · 민봉기 · 정창화 · 박시균 · 김동욱 · 권기술 · 윤두환 · 김종필 · 송영진 · 이완구 · 김성순 · 안상현 · 김윤식 · 문석호 · 신영균 · 임인배 · 안택수 · 장영달 · 서정화 · 이양희 · 신영국 · 배기선 · 송훈석 · 홍사덕 · 최영희 · 김만제 · 조재환 · 배기운 · 강운태 · 이재선 · 박병석 · 이원성 · 김운용 · 김병호 · 이희규 · 김태식 · 김기춘 · 박종용 · 도종이 · 한충수 · 김충조 · 김영환 · 나오연 · 최병국 · 정대철 · 김용환 · 조응규 · 윤한도 · 김기재 · 이경재 · 조한천 · 황창주 · 윤철상 의원 발의)

22.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박창달 의원 대표 발의)(박창달 · 윤영탁 · 이규택 · 김정숙 · 이재오 · 권태망 · 김학송 · 박희태 · 조정부 · 박세환 · 권철현 · 강숙자 · 박종근 의원 발의)

23.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대표 발의)(이규택 · 조부영 · 윤영탁 · 이재오 · 이해구 · 윤경식 · 김정숙 · 하순봉 · 김용갑 · 신경식 의원 발의)

24.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5. 獨學에의한學位取得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4시32분)

○委員長 尹榮卓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정부가 제출한 독학에의한 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까지 2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9항, 제12항, 제13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20항, 제21항 이상 10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金敬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敬天 議員 새천년민주당 金敬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尹榮卓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아침결식, 편식, 편의식품 섭취 증가 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및 비만·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소아 발병률이 급증하는 등 학생들의 영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은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이래 양적으로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져 2003년 기준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96%에 해당하는 9989개교, 66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나 학교급식의 운영수준은 단순한 급식제공에 그치고 있어 학교에서 급식과 연계된 생활교육 차원에서의 영양교육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시정하고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 실시를 통해 학교급식이 교육급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난 2003년 7월 영양교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심의 당시 현재 학교급식 전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구제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통과됨으로써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기로 한 영양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바 현재 학교급식 전담직원에 대한 구제책 및 영양교사로서의 자격취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6년 3월 1일로 정한 시행일도 일반적인 학사 운영일정과 맞지 않아서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6년 1월 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급식 전담직원 중 교직원 및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의 경우는 다른 영양사와는 달리 공무원 정규임용절차에 따라 배치된 것이므로 이들을 단기간의 영양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구제하고 그 외의 영양사는 교육대학원 등의 석사학위 과정을 통해서 영양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대적·합리적 평등원칙에 입각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미 학교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에게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여 책임 있는 학교급식 운영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새로 도입되는 영양교사제도의 현장적용이 바로 이루어져 학교급식의 내실화와 함께 교육급식으로서의 효과를 배가시켜 영양교사제도 도입의 법적 실효성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玄勝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玄勝一 議員** 존경하는 尹榮卓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玄勝一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초중등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해 학교의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또한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주요기능을 학교장에 대한 자문기구로 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유기적 통합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학원의 질서와 화합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학교폭력의 신고의무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식중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 등을 감안하여 학교급식에 있

어서 학교장의 지휘·감독책임을 강화하고 식품 조달방법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체질에 맞는 고품질의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며 특히 잉여농산물의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가 학생급식에 소요되는 잉여농산물에 해당하는 식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 또는 감액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는 국민생활복지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법률안들의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정몽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몽준 의원** 존경하는 尹榮卓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정몽준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저를 대표발의자로 하고 41인의 동료 의원께서 함께 발의한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교육기본법은 포괄적으로 성별에 따른 교육적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남녀평등교육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 등의 교과목 분야와 특별활동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교육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여성들의 자기능력 개발이 크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교육제도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과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근거를 교육기본법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법률안의 취지입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성차별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교육의 경우 전통적으로 여성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여

성스럽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2년 교육법개정안 제9편 일명 타이틀 IX에서 “미국 내에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체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체육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도 성을 근거로 참여를 제한받거나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거부되거나 차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의 성별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르게 배정하거나 진로 또는 학업선택에 있어서 성별 차별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 법을 시행한 결과 미국 교육에 있어서 성차별은 크게 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고등교육의 참여에 남성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현재 미국의 여성들은 단과대학과 종합대학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육법개정안 타이틀 IX은 여성 고등교육의 기회뿐 아니라 여성 체육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여성 체육발전은 미국이 1996년 올림픽대회나 1999년 여자축구 월드컵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교육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은 남녀 타고난 성에 관계없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며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국가의 힘을 증진시키는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입법취지가 반영된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한자교육진흥법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朴源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源弘 議員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尹榮卓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朴源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야 85인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한자교육진흥법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느끼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 학생들의 한자실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생의 80%가 자신의 부모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한

다는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우리 학생들이 1년씩 현지에서 다시 한자를 배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아예 한자를 쓰지 않거나 한자·한문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교육 체계의 한자교육은 너무도 부실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오히려 한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교육을 통해서 한자능력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자급수 시험에 응시하는 숫자가 무려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문서에 영어와 한자를 섞어 쓰도록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한자학점 이수제도를 채택한 대학이 늘어갑니다. 민간부문의 이런 노력에 정부만 뒷짐을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한자교육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국가가 한자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한자 육성정책도 세우고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맞는 한자 발전 방안도 마련하고 한자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육성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교사가 부족하면 양성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교재도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자교육진흥법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 여러분!

한자교육진흥법안의 각 조문을 한 줄 한 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이 법이 우리 어문정책의 기본방향인 한글전용 정책과 현재 논의 중인 국어기본법에 맞서려는 법률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현행 어문정책의 틀 내에서 취약한 교육 분야에 대한 국가의 중점 지원을 규정하는 진흥법일 뿐입니다. 이른바 한글-한자 논쟁은 국어기본법 제정과정에서 다루어질 성질의 것이며 이 법률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취약한 한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현행 교육체계 내에서 한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별도의 진흥법이 필요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부의 한자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교육인적자원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한자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부가 먼저 나섰어야 했습니다. 그

런데 의아스럽게도 이 법에 대해 매우 소극적입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의 과학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유아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등 여러 진흥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법률마다 교육부 장관 산하에 심의회를 두고 연구기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자교육진흥법 내용도 이들 법률과 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과학교육 진흥을 위해 별도의 진흥법이 있듯이 한자교육의 진흥이 필요하다면 이 법률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尹榮卓 위원장님과 교육 위원님들, 한자교육은 미래를 위한 열린 교육이며 세계화·정보화 교육입니다. 인류의 4분의 1인 15억 인구의 한자문화권은 앞으로 세계문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한자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가장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중국,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봉건적 잔재라며 한자를 버렸던 북한은 1960년부터 문자정책을 바꾸어 인민학교부터 무려 3000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800자의 1.5배가 넘습니다.

한자교육은 우리의 뿌리와 얼을 찾고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토대입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한자를 배웠듯 우리는 후손들에게 한자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한글 창제 이후 수백 년 동안 한자와 한글을 함께 썼습니다. 우리 대에서 한자의 맥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표음문자인 한글과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뜻을 오랫동안 전파할 수 있는 표의문자인 한자는 우리 문자의 양 날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마는 아무쪼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회장인 閔寬植 전 교육부장관님과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집행위원장님인 陳泰夏 명지대학교 교수가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을 기록상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閔 전 교육부장관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한교원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재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이 두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李在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李在五 議員** 이 두 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9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金敬天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敬天 議員** 존경하는 尹榮卓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金敬天 의원입니다.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수 격감으로 학교운영이 어려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97년 8월 22일 해산특례규정을 신설하였으나 98년부터 금년까지 모두 14개 학교법인이 해산하는데 그쳐 아직도 학생수 100명 이하 영세사학이 97개교나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영세사학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교육재정 운영상으로 비효율적이므로 영세사학의 해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산특례기한을 3년간 연장하였는데도 해산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면 설립·경영자의 학교 경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정부의 사학 재정결합 전액 보조로 해산에 소극적인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법인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나 잔여재산 귀속자인 설립·경영자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지 않아 해산을 기피하고 있으며 영세사학의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귀속재산의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도 낮아 해산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

연장하도록 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중등 사립학교는 그동안 국가를 대신하여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해 왔고 학교가 영세하게 된 주원인이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수 격감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학교법인에 있지 않으므로 영세사학의 해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세사학의 해산이 촉진되면 학생들에게는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게 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늘어나는 과외 사교육비로 인한 학부모들의 가계부담 때문에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크게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과외 사교육비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학원법에 규정된 후 개인과외교습자 수가 급증하고 무신고, 고액교습료, 편법운영 등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현행 법령에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규제조항이 인적사항 등의 신고의무 외에는 별다른 규제 사항이 없고 개인과외 신고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어서 주소지 관할 교육청과 교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교습장소 관할 교육청이 다름으로써 현실적으로 그 실태 파악이나 지도·감독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과외 사교육비의 고액화를 부추기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한 규제와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2000년 과외금지에 대한 현

법제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당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를 통해 법적 인정토록 함으로써 합법화되었으나 같은 기능을 가진 각각의 법률적 주체에 대한 법률규정이 달라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와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규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애초부터 많은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개인과외의 속성상 고액의 교습료가 생성될 수밖에 없어 대부분 학원수강료나 교습소의 교습료보다 월등히 높은 고액의 교습료를 받고 있음에도 영수증 발급마저 할 필요가 없어 세금 부과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법률상 교습주체 간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들 교습주체에 대한 규제를 형평에 맞게 하여 개인과외교습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장소에서만 교습할 수 있도록 하되 시설을 갖추어 학원이나 교습소와 유사한 형태로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습소로 신고하여 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현행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원 교습소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법적인 과외사교육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건전한 개인과외교습 풍조를 조성함으로써 과외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가져오고 법률체계 정비 및 그 실효성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일괄적으로 넘어가는데 도저히 혼동이 되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 의견을 낼까 합니다.

사실은 주요현안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질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호흡이 딱 끊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25항까지 다 하고 나면 정말 혼동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항까지가 초중등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20항까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면 좋겠어요. 20항까지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달라지고 있어요. 아무리 교육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이렇게 하면 전적으로 혼란과 혼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다음에 21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법다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요현안보고부터 토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냥 놓치고 계속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국회의원님들의 대표발의법안이 몇 개 있는데 검토보고도 듣고 질의 줌 하고, 그렇게 끊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의사일정 순서대로 정리해서 하자는 김정숙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 있는데 이제 3건밖에 안 남았습니다. 20항, 21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지금 22항에서부터 25항까지 제안설명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4개 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사 간에 이미 합의하셨고 지금 거의 다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실 분이 세 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지요.

○**김정숙 위원** 다 그렇게 한다면 양해하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해서는 못 알아들겠어요. 저는 혼동이 돼서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김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라는 처음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4건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20항까지만 하면 초중등 관련법안이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 심도 있는 토의가 끝난 다음에 21항부터 하면 안 될까요?

○**委員長 尹榮卓** 김 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박창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달 의원** 존경하는 尹榮卓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입니다.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 시간강사는 고급 연구인력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의 교수업무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지위와 낮은 강사료로 인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교양과정의 경우는 대학 강의의 절반 이상을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이 현실적으로 시간강사에 대한 의존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구조는 심각히 왜곡되어 있어 시간강사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강사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방학기간에는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아 부업을 해야 하며 생활고로 자살까지 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풍토에서는 제대로 된 강의와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어 대학교육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문 후속세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간강사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시간강사들이 학문 후속세대로서 연구·교육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지원·보조하여 대학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데 기여하고자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시간강사와 관련된 법조항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고 법체계상 시간강사의 처우와 관련된 구체적인 관련내용을 다루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시간강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최소한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시간강사들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

니다.

이러한 입법을 통해 우리 국회가 현재 열악한 시간강사들의 문제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고 이들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고급 연구인력들의 연구의욕 상실과 이로 인한 신진세대의 학문 기피현상을 잠정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동법은 예산지원의 효과를 크게 나타낼 것입니다.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기타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이규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택 의원** 이규택 의원입니다.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일반대학과 달리 완화된 설립기준인 개방대학 설치운영규정에 의해 설립·운영되었던 산업대학이 관련규정의 철폐로 인하여 일반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과 달리 제도적으로 차별이 계속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학교의 종류에서 산업대학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산업대학의 설치목적, 수업연한 등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산업대학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8개 국·사립 산업대학에서 이 법 개정예 찬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대학의 모델인 영국의 폴리테크닉법도 지난 92년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반대학과 산업대학 간에 차별화가 별로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어서 산업대학에도 이미 공학부, 이공학부, 예술학부, 인문사회학부 등이

있고 또 일반대학에서도 산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을 설립하고 있어서 지금 차별화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산업대학과 일반대학 구별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고 대학 자체 기능에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산업대학의 설립목적인 목적사업의 예산지원이 없어집니다. 때문에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의 차별화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립 산업대학과 국립 산업대학 간에 산업대학 폐지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4항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5항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해 교육부총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존경하는 尹榮卓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은 현재 교육인적원부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해산인가 및 임시이사 선임업무 등을 앞으로는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여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별규정의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이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제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 있어서 부

정한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시험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개 법안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柳忠鉉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3년 4월 16일 김정숙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와 관련하여 안 제19조의2의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학생상담 관련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교사제는 1997년 초·중등교육법 제정으로 전문상담교사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격기준은 동법 제2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각급 학교에 대한 배치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5조에 그리고 자격검정기준과 이수과목 및 학점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4항과 동 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의2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03년 5월 현재 전문상담교사의 양성과정은 전국적으로 81개 대학 162개 비학위과정에 개설되어 계절제 또는 야간제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문상담교사는 1999년 관계법령이 규정되어 2000년도부터 2003년 2월 말 현재까지 1만 2638명이 양성되었으며 여기에 종전의 교도교사자격증 소지자 6722명을 합한 총 1만 9360명의 교사가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이 중 교원정년 단축, 기타 사유 등으로 퇴직한 자를 제외한 1만 5434명의 교원이 현재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 중 61.1%에 해당하는 9425명이 비수업 및 수업겸임상담교사로 일선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의 구분·임무·자격 등만을 규정하고 교원의 정원·배치기준 등은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기준도 여타 교원과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일선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둘 수 있는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도교육청이 일선학교에 상담만을 전담하는 상담교사를 두지 아니하고 수업겸임교사로 하여금 학생상담을 맡게 함으로써 전문상담교사제를 두도록 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 전문상담교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시 의무 등을 모범으로 규율하도록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그 개정취지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상 실기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등의 배치문제와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을 부언드립니다.

일선학교에 있어서 전문상담교사를 양성·배치할 수 있는 범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현실은 교과담당교사 확충을 우선시하고 전문상담교사 등 비교과담당교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소홀히 하여 학교가 지식 위주의 교육장으로 변하여 각종 학생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선 각급 학교에 상담만을 전담하는 상담교사를 시범적으로 배치하여 제도시행의 타당성을 선도·검증할 수 있는 정책적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이 개정안과 같이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포괄적인 의무조항을 두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는 현장 활용성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상담·심리학 관련교과의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보유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은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현직교사-2급 정교사 또는 2급 보건교사 이

상의 자격증을 가진 교사-에게만 자격증 취득기회가 부여되고 교육경력이 없거나 3년 미만이지만 상담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아 상담실무 능력을 갖춘 각급 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들은 원천적으로 자격증 취득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여 인력양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담실무 능력에 대한 검정절차 없이 양성과정에서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증이 주어지므로 이의 활용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교과담당교사 등 상담업무를 부가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간의 상담역할 분담이나 수업시수 조정문제, 현장 활용성 높은 연수제도 도입 등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가 갖는 입법취지가 본래 의도한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교사들의 평점관리용으로 전락된 점도 없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현행 제도의 수정 또는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표1과 같이 학교상담의 전문성과 학생상담기능의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3년 11월 7일 황우여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 사서교사의 자격기준을 여타 교사의 자격기준과 같이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자격기준 1급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사서교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이 여타 교사 자격기준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며 사서교사의 자율적인 전문성 제고와 우수한 예비사서교사 인력군 형성의 유인책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사의 구분과 그 자격기준이 획일적인 동일기준으로 세분화되어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컨대 신설되는 사서교사 1급에 대한 자격기준이 사서교사의 전문성 함양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보건교사 1급이나 영양교사 1급의 자격기준에는 이와 같은 자격기준이 없어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담당교사의 자격기준과 비교과담당 교사의 자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3년 11월 11일 金敬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동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양교사의 자격기준 확대와 관련해서 안 별표2의 교사자격기준 중 영양교사 2급 제2호 신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별표2의 영양교사 2급 자격기준란에 제2호,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영양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를 신설하여 영양교사제도 도입 이전에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및 영양교사제도 도입 이후라 하더라도 학부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에 대해서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타 과목 교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예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이나 법체계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현직 학교급식 전담직원에 대한 특례와 관련해서 보고드리면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은 별표2의 제2호 영양교사양성과정의 예외를 인정하여 1년 이상의 비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직자 특례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서 현 재직자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비학위과정의 영양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 공공기관, 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타 직종 영양사들과는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안 부칙 제2항에서는 현직자 특례의 범위를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

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근무조건이나 경력인정 등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를 특례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근무경력연수 제한문제와 관련하여 안 부칙 제2항에서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현직자의 근무연수를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업무수행경력 등을 고려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행일 변경과 관련하여 안 부칙 제1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에서는 영양교사제도의 시행일을 2006년 3월 1일에서 일반적인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2006년 1월 1일로 변경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3년 4월 24일 玄勝一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에 당해 학교장을 추가하면서 동위원회 위원장직을 당연히 맡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학교장에 대한 심의기구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기구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학교장의 위신과 책임을 높이고 학교운영의 유기적 통합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학원의 질서와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1996년부터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0년부터는 모든 초중등학교에 그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구성원인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인데 그 기능이 국·공립학교에서는 심의기능을 갖고 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능을 가지고 있습

니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과 같이 학교장에게 당연직 위원장을 맡게 하고 위원회의 성격을 심의기구에서 심의·자문기구화하는 방안은 일각에서 진정한 교육자치는 학교자치에 있다고 보고 학교의사결정구조 다원화를 위해 현행 교장임명제를 선출보직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과는 서로 상반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법제화 여부는 교육주체들 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학교폭력에방및대책에 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3년 6월 23일 玄勝一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법안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임종석 의원 대표발의가 되겠습니다-에 대해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지난 4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적된 바 있는 여러 가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제출된 제정법안으로 기본취지가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사후처리를 교육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안 제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이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설치와 운용 및 절차에 편중되어 있고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이 본문조항 중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조문등을 추가함과 아울러 법률안 제명을 학교폭력에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으로 변경한 점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공청회 과정에서 학생폭력이라는 용어를 주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주장하시는 분 역시 반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임종석 의원이 낸 안에서 3단계로

설치되는 학교폭력중재위원회가 그 구성이나 기능 등에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그 대안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두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행정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을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이의 심의요건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조직으로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둬으로써 당해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 관련 대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후관계를 명확히 설정·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의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학교상담체제로는 최근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학생폭력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전문상담교사와 책임교사의 배치 문제를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은 일응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원의 정원확보율이 낮아서 교과담당교사 확보도 어려운 실정에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바 이의 조문을 실효성 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분쟁조정권한을 해당 지역별 또는 학교별로 설치·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그 조정기간도 1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조정권한을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 없이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은 교육적인 견지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을 두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조정절차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바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째, 학교폭력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이 단순히 상징적으로 신고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어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예방적 기능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그 자체가 프로그램적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3년 4월 24일 玄勝一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의 임무와 관련하여 학교급식은 금년 들어 전국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전면급식이 실시될 만큼 양적인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직도 부실한 급식체계와 위생관리가 허술하고, 질 낮은 식품원료 사용 등으로 인해 식중독사고가 빈발하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휘·감독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의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해당 학교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급식 관련 주요업무들을 명문화해서 학교장에게 소신 있는 급식 업무처리를 일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 안은 과잉생산 등으로 잉여가 된 안전하고 질 좋은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조달로 구매하고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용으로 최우선 순위로 공급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한 조문으로서 우리 잉여농수축산물을 급식용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조문은 역시 여타 학교급식법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표현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잉여농수축산물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조달로 구매하여 무상 또는 감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생산된 잉여농수축산물을 국내외 지원용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공급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규정은 큰 틀에서 정부조달행위로 WTO정부조달협정 제3조와 동 협정 한국 양허표 부속서 1에 대한 주석 3항에 위배되어 통상마찰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학교급식법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농수축산물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문을 두는 것보다는 이미 WTO정부조달에관한협정에 의해 양허를 얻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축산법을 통하여 잉여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으로 조달하는 방안의 강구가 보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3년 5월 27일 崔榮熙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동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과 관련하여 현 위탁급식제도는 1981년도에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교급식이 성공적으로 확대 정착되어 감에 따라서 중고등학교 급식도 조기에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2년 12월 말까지 전체 급식학교 9989개교 중에서 18.8%에 해당하는 1874개교가 위탁급식을 통해 학교급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도입된 위탁급식제도가 그동안 운영상 일부 시·도교육청이 위탁급식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과정에서 위탁급식업자의 이윤추구 행위로 인한 저질의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등으로 대규모 집단 식중독사태를 야기하는 등 각종 부작용과 폐해를 발생시켜 학부모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어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붙임 1과 같이 위탁급식도 과도한 교육재정의 부담 없이 학교급식 저변확대에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위탁급식업자의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직영급식을 의무화할 경우 급식시설이나 설비 및 급식인력 인건비 등에서

교육재정에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영양교사의 배치에 관련해서 보고드리면 현행법상 학교급식을 전담하고 있는 영양사는 국·공립의 경우 식품위생직 공무원, 사립학교는 학교직원, 위탁급식은 업체직원으로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이 개정되어서 2006년 3월 1일부터 학교급식 전담직원 대신 영양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이 개정안이 의도한 입법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李柱榮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 학교급식법 제8조의 해석상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일반 자치단체인 시·도, 시·군 및 자치구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학교급식지원 관련 조례에 의한 식재료 구입비 지원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마찰을 빚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명확히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법, 동 조항의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부담주체인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개정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 교육 관련 각종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부여되고 있는데 이 중 지방자치단체를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로 구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해 당사자인 관계부처가 해석상 필요에 따라서 시·도교육감으로 한정하거나, 아니면 시·도교육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까지도 해석하거나 또는 시·도교육감은 배제하고 일반자치단체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들 분야에 있어서 해석상 논란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지난 11월 5일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회의 시 교육인적부,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가 합의하여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개정안을 금년 11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서 12월 중에 동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尹榮卓 위원장, 박창달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1년 11월 23일 정몽준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의 실익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행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이념을 구현하고 있으며 199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도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의무를 공공기관 및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과 같이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존 관계법령에 의해 교육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의 차별금지라는 입법취지가 반영되어 있으나 교육기본법이 주로 학교교육의 양성평등에 관한 원칙적·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이 개정안의 신설내용은 교육현장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구체적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실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차별금지 의무의 주체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차별금지 의무의 주체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는 물론 모든 사람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은 제1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이 법의 다른 조문들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를 각종 시책 강구 및 책임과 의무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7조의2에서만 그 의무의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모든 사람(법인, 자연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과 다른 관련 조문과의 체계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누구든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의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한교원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3년 10월 20일 李在五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제명 및 목적규정과 관련해서 1971년에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대한교원공제회법은 제정 당시에는 공제회 회원으로 교원 및 교육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5년과 1986년 동 법 개정을 통하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및 그 직에서 퇴직한 자까지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자격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의 제명을 현행 ‘대한교원공제회법’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개명함으로써 이 개정안의 적용대상과 법의 제명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명 중 ‘대한’을 ‘한국’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정책적 판단 사항으로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약 85%의 정부투자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예를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법 제7조의2 회원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립대학 부속병원의 직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무직원에 해당되어 교원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국립대학병원 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해당되어 회원가입자격을 유지하여 오던 중 1991년 3월 8일부터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이 시행되면서 별도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 임직원은 회원 자격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 기관 내에서의 기가입직원과 미가입직원과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립대학

병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 임직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과 관련하여 이 개정안에서는 현행 법 제11조제2호의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시설의 운영”사업을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으로 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서와 같이 소극적으로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시설의 운영”을 “각종 복리·후생사업”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료의 요청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이 개정안에서와 같이 공제회법에 근거가 없이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쉽지 아니할 것이므로 법에 그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임원 감사의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현행법 제14조 및 대한교원공제회 정관 제17조에서는 공제회의 임원으로 감사 2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대한교원공제회는 1984년 3월 이후 상임감사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감안하여 이를 “감사 2인 이내”로 개정하려면 것인바 이는 2인 감사체제로의 운영이 업무처리의 혼선 야기 등 업무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그 대안으로 1인 감사체제로 운영하되 감사실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의 경우 총 자산규모가 9조 7114억 원에 달하고 주요사업의 대부분은 회원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체계에서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법 제15조에서는 이사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임명에 관해서만 이러한 절차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사장이 이사를 임명하되 임명 시에만 법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영재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3년 10월 27일 李在五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전문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은 2001년 1월에 제정되어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 시행령이 2002년 4월 18일 공포되었으나 2002년 11월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이 법에 의한 영재교육은 2003년 3월 부산과학기술이 개교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교육진흥기본계획수립,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위탁교육 및 교원의 파견 등 법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들을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직접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서 이러한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준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대안으로 사료됩니다.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법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영재판별기준에 따라 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교육감의 선정권한의 일부를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현행 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서도 선정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의 일부를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재교육의 여건과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이고 있

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상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양 제도의 장단점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통하여 적극적인 개선방안 강구와 함께 입법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법의 개정시기 및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영재교육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 분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현행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일단 법체계를 바로잡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대폭 수용한 후 미비점은 다음 개정 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자교육진흥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3년 9월 5일 朴源弘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제정법안은 한자어가 우리말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젊은 층들의 한자능력 감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학문적 단절을 막고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자교육 수요를 국가적 차원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한자교육 확대에 관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한자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유글자인 한글을 육성·발전시키고 국가 어문정책의 기본인 한글전용의 원칙을 유지해 나가는 바탕 위에서 우리말의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한자어에 대한 이해를 확대해 나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차원의 한자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은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제정법안과 관련하여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마련 중인 국어기본법과의 충돌문제, 교과과정 편성 등 기존 교육정책상 타 교과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국가기관 설치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바 이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어기본법과의 충돌문제와 교육정책상의 문제

점은 표1, 2, 3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자교육진흥원 설립 등 관련단체 재정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따르면 한자교육진흥원을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고 진흥원의 사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자교육의 내용·방법 및 평가에 관한 개발, 한자교육의 학습방법 및 교재의 개발, 한자능력 검증 및 한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한자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자교육진흥원의 설립에 대하여 소관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한자교육에 대해서만 독립된 교과진흥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타 교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말하는 한자교육진흥원의 설립 문제는 국가가 사회적 필요성을 제도 및 기관의 설립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한자교육부문 역시 현재 정규교육과정상의 타 교과들과 함께 학생들의 교육과정의 일부분을 구성한다는 점, 타 교과들 역시 각각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한정된 국가예산 등의 고려사항도 존재하는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3년 5월 21일 金敬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동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이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재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례규정에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은 이 특례규정이

1997년도에 도입되어 1998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영세사학의 통폐합정책이 지지부진하여 2000년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인해산 시 설립당초 재산출연분에 대한 법인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전제로 재차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고 교육재정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개선·보완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제도의 보완 필요성과 개정안의 지원방안 타당성 여부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사학의 자발적 해산을 지원하기 위한 현 규정은 소기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규정이 금년 말로 그 적용시한이 만료된다는 점과 여전히 동 규정이 신설 당시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 격감으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고 이를 강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해산을 준비 중인 영세사학들에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해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신설하고 이의 적용기한을 3년 재연장하는 것은 영세사학의 실질적인 해산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택적 지원방안 중에서 첫째, 영세사학들에 대한 해산장려금 지원방안은 자발적인 해산 저해요인 중 그동안 한시적으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반면 잔여재산 귀속자들은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아 해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증여세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나 조세형평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현실적 지원방안으로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개정안과 같이 영세사학들의 기본재산 가액의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증여세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려

는 것으로 영세사학의 해산 필요성과 정책적 수단의 합리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등이 직접 매입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부실한 영세사학에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정부가 직접 매입하여 해산을 유도하는 것이 더 많은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영세사학 재학생들에게 정상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택적 지원방안은 표 4와 같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바 당해 영세사학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원활한 해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선택적 또는 병행하여 실시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영세사학 해산 시 고려해야 할 문제점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면 영세사학을 해산함에 있어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단순히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해산을 유도하기보다는 취학 예정자의 전·입학과 통학문제 등 주변의 교육여건들을 참작해서 해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3년 8월 14일 윤경식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교육감의 직무대행규정과 관련해서 현행법에서는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의 유형별로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교육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여 교육감이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궐위된 경우,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과 같이 장기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나 강학상으로는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의 요건과 효과를 엄격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장기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일시적 직무상 공백을 상정한 직무대리규정만으로 불충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입법례에 따라 교육감이 궐위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부교육감의 권한대행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현직 교육감도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권한대행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할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기간 중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창달 간사, 尹榮卓 위원장과 사회교대)

둘째,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규정된 직제순에 의한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도 위와 같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법 체계·자구정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안 제33조의2의 제명을 ‘교육감의 직무대행’ 등으로 하고 있으나 동조의 본문에서 권한대행과 직무대리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조문의 제명을 ‘교육감의 권한대행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법 제58조제2항에서는 교육위원의 선거구 및 교육위원 정수를 별표 2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경기도의 화성군, 광주군, 양주군, 포천군이 각각 군에서 시로 승격되고 충북 증평군과 충남 계룡시가 각각 새로운 선거구로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해서

별표 2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2년 10월 10일 황우여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교육감에 출마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에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교원 등의 현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우려 및 타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와는 달리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에서 교원 등 현직 공무원 등이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고 교육위원 및 교육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덕망을 지닌 유능한 인사를 입후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교육감 선거의 경우 공직 사전사퇴의 제한을 두는 공무원과 예외를 인정하는 공무원의 범위규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현행 간선방식은 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민직선제를 도입하여 주민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출제도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 및 교육감 출마의사가 있는 교육공무원 등에 대해서 후보자 등록신청 전에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3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권한사무 이양문제와 관련해서 이 개정안은 교육자치 이념과 참여정부의 정책모토인 지방분권 이념을 상호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정책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국가와 지방 간 권한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행정 권한사무 중 실질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집행하고 있는 사무를 완전 이양하고 이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표 1의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되는 업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개정안이 지난 2000년 11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행정권한 지방이양 및 영세사학 해산 지원 특례규정의 적용시한 연장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과정에서 교육감의 선출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권한사무를 완전 이양하는 방안은 재론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사립학교법 전면 개정 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영세사학 해산유도를 위한 특례규정의 시한연장과 재정지원근거 신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金敬天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과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세사학 해산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이 개정안은 교육당국이 영세사학이 처한 열악한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해서 재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되나 이는 일반적·포괄적 위임입법에 해당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성 차원에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 개정안과 같이 영세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국가는 제외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개정안의 당초안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정지원 주체에 국가를 포함시켰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일응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재원이 자체수입보다 대부분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산특례규정이 갖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재정지원주체에

국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까지 15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까지 6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5항 정부가 제출한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順泳 제18항 황우여 의원 등 21인이 제안하신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으로서 현재의 다양한 대학 재정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 일반회계, 기성회계, 연구비회계 등을 대학회계로 통합하는 것과 이러한 대학회계의 심의·의결·운영을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에 있어 사립대학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인바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별도로 도입하여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중앙부처의 광범위한 지휘·감독권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과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이 제정법안 발의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국립대학의 재정구조에 관한 입법방안에 관하여는 과거에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즉 87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국립대학특별회계제도 도입 건의가 있었고 이후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 논의도 있었으며 97년 9월에는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이 정부입법으로 입법예고된 바 있었으나 관계부처 간 또는 대학의 반대로 입법화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살펴볼 때 국립대학 재정구조에 관한 입법방안은 특별회계제도 도입방안, 대학회계제도 도입방안 및 특수법인화방안 등으로 대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제정법안의 경우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관련자의 의견을 소개하면 동 법안에 관해서는 관련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부터 이견이 제출되어 온 바 있고 교수협의회, 총장협의회 등으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즉 예산편성 및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및 국가 재정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의견은 대학회계제도 형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이들 경제부처는 대학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법안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립대학 측에서는 재정위원회의 위원구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통제 규정 등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면 먼저 대학회계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것인데 현재 대학의 회계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대학회계 또는 대학특별회계 중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제도를 입법하는 경우 대학특별회계로 할 것인지, 대학회계로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그간의 입법추진과정이 보여주듯이 쉽게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립대학 회계방식의 채택에 있어서는 국회 차원에서 각계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수렴하고 예산부처와 국립대학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견해를 각각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11조에서는 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국가지원금과 자체수입금을 통합 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에 국고회계와 자체수입금을 통합한 대학회계를 두되 소비조합 및 기숙사 관리 등에 대한 회계는 따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회계는 대학의 장이 관리·운영하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금과 자체수입금, 결산상 잉여금, 장기차입금 및 수익금 전출액 등으로 구성하면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금 중에는 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운영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운영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대학 측에서는 대학예산을 법률에 명백하게 규정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1000분의 3의 운영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대학의 발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에 비하여 예산부처에서는 일정비율의 법정화에 대하여는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면, 운영비 지원 비율을 법률에 정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경직성 초래뿐만 아니라 대학 입장에서도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체수입금에 대학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포함되도록 규정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국립대학 측에서는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이나 연구보다는 수익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의하면 대학의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은 대학의 장, 교직원 대표 외에도 동창회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또는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 등 9인 이상 15인 이내로 외부인사가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으로 대학회계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학으로 이양하는 만큼 재정위원회에는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사료되나 교수협의회 등 대학구성원들 사이에는 외부인사가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장악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외부인사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하면, 대학구성원의 주장이나 제정안의 취지는 각각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 우리의 고

등교육법 체계에서는 교수회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구가 법정기구화 되어 있지 아니한바 교수회로 하여금 예산·결산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교수회에 대한 법정기구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제정안과 같이 규정하더라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의 비율은 대통령령이 아닌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의결기관인 재정위원회에 집행기관인 대학의 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학운영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재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 제정법안의 취지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그 방법과 관련하여 회계제도의 방식 채택, 재정위원회 위원구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논란은 각각의 입장에서 반복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손쉽게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제 국회 차원에서 각계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종합 수렴하여 마지막 결론을 이끌어낼 때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과 20항으로 金敬天 의원 대표발의와 尹榮卓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신 두 건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敬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검토를 위하여 먼저 개인과외교습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는 약 3만 8000명 정도이고 교습료는 과목당 최고 2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의 특성상 신고되지 아니하는 개인과외교습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고액과외로 인한 사교육비 문제 및 세금포탈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개인과외교습의 경우에도 그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현행 학원법상 나타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일부 형태의 개인과외교습은 일반학원비에 비하여 높은 교습료를 받지만 학원법 및 동 법 시행령상 관할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가계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고 둘째, 200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이 합법화된 이후 기존 학원운영자 및 강사들이 학원이나 교습소에 비하여 완화된 규제를 받으면서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과외방의 형태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관할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고 셋째, 관할 교육청이 신고 없이 개인과외교습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학원법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에 교습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들에 대한 단속조차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2000년 과외교습금지 위헌결정 당시 헌법재판소가 밝힌 정당한 공익으로서 고액과외방지, 사교육비 부담경감 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학원법상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적정수준의 규제장치 마련 및 제도 보완 조치는 일용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체적 규제 방법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말하는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규제방안은 첫째,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한정하는 안 제2조의 내용 외에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가능하도록 신고사항에 교습장소 및 학습자 수를 포함시키는 내용 그리고 무신고 혹은 허위·부정한 방법의 신고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현행 학원법상의 처벌단계를 간소화하여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세 가지가 주 조문내용인데 그 중에서 첫째, 학습자의 주거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한정하는 이른바 개인과외교습의 범위설정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학원법은 개인과외교습자를 학원 또는 교습소 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상 학원법에 등록·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 외의 다른 장소, 다른 시설에서 하는 교습행위는 모두 개인과외교습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외방 등 일정규모를 갖추고 여러 명의 개인과외교습자가 동일 장소에서 연계하여 과외교습을 하

는 형태의 경우 외형상 학원 및 교습소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는 경우 학원법상 시설기준, 환경기준, 수강료 조정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개인과외교습자를 학습자의 주거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만 한정하는 경우 시설 및 개인주거 등에서 학생들을 모아 행해지는 개인과외교습은 학원법 규정에 따라 학원 또는 교습소로 등록·신고하지 않는 한 불법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를 한정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단속의 실효성과 표면화된 사회적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개인과외교습자를 한정하는 경우 학원법상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만이 사교육 영역에서 합법적인 교육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외의 다양한 형태의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가 모두 불법적인 행위가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2000년 헌법재판소에 의한 과외교습금지에 대한 위헌판결의 결정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의 다양한 개인과외교습을 모두 불법화시킨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음 이 개정법안의 주된 취지는 기업형 개인과외교습의 고액교습료 및 세금포탈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 개인과외교습을 학습자의 주거장소로만 한정하자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외교습자들은 무신고 교습행위를 지속할 것이고 동시에 위험 프리미엄으로 인한 과외교습비 상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적정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과도한 규제 및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 설정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 확대문제나 불법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처벌단계의 간소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尹榮卓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신 동 개정법률안 중 추가조문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조문은 현직교원의 과외교습금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벌칙규정을 정비하자는 것인데 법체계상 벌칙의 부과는 사회적·행정적 목적에 의하여 법률에서 새롭게 부과된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벌칙규정에 우선하여 의무부과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이 개정안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尹榮卓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법안은 학생모집의 어려움과 경쟁력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하에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 인재의 양성을 도모하여 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볼 때 동 법안의 내용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동 법안의 내용이 예산과 관련이 있는바 예산확보에 있어서의 제반 문제 등에 대하여 정부예산의 편성과 기획을 담당하고 예산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지방대학 육성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수도권 대학이 배제되어 있어 별도의 수도권 육성 방안이 어떻게 강구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관계자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이 법안은 제정법안이며 제정법안의 경우 국회법 제64조에서는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도 별도의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방대학 육성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임을 고려할 때 동 법안의 내용은 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정책목표에 따른 합리적 정책수단의

마련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박창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셨고 또 내년도 예산안에 1000억 원을 증액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 제안자이신 박창달 의원님이 조금 전 소상하게 그 취지와 정책적 결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점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문제는 비정규직 고용인력의 사회적 문제와 함께 최근 가장 어려운 국가정책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강사에 대한 지원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단기적인 응급처방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이를 고등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의 수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시급한 사안인 만큼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볼 때 보다 체계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하여야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 법률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23항 이규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 검토와 관련하여 현재 산업대학 학교 수 및 학생 수 현황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산업대학은 1982년 개방대학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8개 국립대학과 11개 사립대학 등 19개 대학이 설립·운영되고 있고 학생 수도 19만 명 수준으로 성장하여 전체 대학 학교 수나 학생 수에 있어서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충원 현황을 보면 80.4%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어 일반대학의 충원율이 98.2%인데 비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또 학부·학과 운영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산업대학이 공학부, 이공학부, 예술학부, 인문사회학부 등의 학부를 영어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문예창작학과, 사회체육학과 등 학과를 백화점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일반대학과 차별화되

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산업대학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미미한데 2004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그동안 칸막이로 분리하여 지원해 오던 대학 다양화·특성화사업 예산의 경우에도 이번에는 별도 칸막이를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실상 일반대학과 구별되는 산업대학의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은 이제 없게 되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산업대학과 일반대학은 산업대학 설립 초기와 달리 구별의 실익이 별반 없는 것이 사실인 만큼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으로 모두 전환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나 이 조치가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산업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립산업대학의 경우 교원확보율, 교지·교사 확보율 등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일반대학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인데 그 전환에 따른 비용과 학생정원의 축소 등 개별 대학마다 입장 차이가 있고 국립산업대학의 경우 조직, 정원, 예산 등의 확보가 필요하나 이도 역시 국가재정과 공무원 수의 제한 등으로 단시간 내에 전환하기에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25항 정부가 제출한 독학에의한 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제안한 내용대로 부정행위를 한 자 또는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를 한 자에 대해서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 시행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즉 이와 같은 응시자격 제한조치는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아가서 현재 독학학위 취득 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이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국민의 권리 제한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모두 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재조치의 내용으로서 응시자격 제한을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적정

한 기간이라고 사료되나 독학사 학위취득 시험의 경우 학위취득을 위한 다단계의 시험과정과 장기간의 시험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학업의 연속성 및 평생교육 진흥 차원에서 제재기간을 다소 축소할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시험 무효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검토하면 현행 행정절차법 제22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청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청문의 필수적 시행여부는 개별 법률에 맡겨두고 있으므로 시험 무효처분에 따른 수험자의 권익에 필요한 청문절차를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발언시간은 15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활용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薛勳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勳 委員 먼저 교육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문제인데 학사일정이 마비되고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고 교수들 역시 삭발하는 등 동덕여대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동덕여대에 대해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임시이사, 소위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사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빨리 사립학교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어서 동덕여대 사태를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가 감사한 결과 조치사항들을 보면 동덕여대가 2001년 이후 교원 연구비, 업무추진비 등등의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이은주 이사장에게 3억 4800만 원을 인건비로 주고 8억 2000만 원을 이사장에게 부당하게 지급하고 교비수입금 78억 700만 원을 법인수입으로 부당하게 계상하고 19억 5000만 원을 교비회계로 미전출 처리하

는 등등으로 해서 이사장, 총장이 고발되고 관련 직원 13명이 징계 통보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임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전임강사로 허위보고하고 겸임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겸임교원으로 허위보고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정과 비리가 많이 적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감사해 본 결과 66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이은주 이사장, 조원영 당시 총장, 심재연 당시 총무과장에 대해서 고발조치했고 이은주 이사장에 대해서는 선임을 취소하고 조원영 총장과 심재연 총무과장에 대해서는 해임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는데 현재까지 이은주 씨는 이사장직에 있고 심재연 총무과장은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려진 상태에서 여전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계고기간 내에 원상복구하면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없는 사립학교법의 맹점 때문에 교육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런 비리를 저질렀으면 이사장직을 내놔야 합니다. 안 됩니다.

교육부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지금 동덕여대의 상황은 학교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수나 학생이나 학부모는 빨리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과 배치되는 현상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새로운 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동덕여대가 옵션 선물에 교비를 투자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알고 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薛勳 委員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다시 감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교수들이 삭발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신입생도 뽑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동덕여대는 작지 않은 대학이고 많은 학생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또 학생들의 비리를 척결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매달려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법 이전에 상식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대학사회에서는 상식이 안 통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금융사기 의혹이기 때문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총리께서 동덕여대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취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청주에 있는 서원대학은 임시이사진의 정이사진 전환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중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좀더 검토해 보고 확실한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이사회를 해 가지고 박인목 씨를 이사장으로 결정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이미 전 이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합니다.

○薛勳 委員 결정 났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다만 박인목 씨가 원래 약속했던 대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현재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薛勳 委員 저는 박인목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제가 서원대학에 임시이사로 나가 봐서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잘 단합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뒤로 교수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다른 부분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어쨌든 박인목 씨가 재정상태를 확실하게 밝혀서 학교를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보여주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부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박인목 씨의 재정상태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상태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경영을 하면 본의 아니게 지난번 도망간 그 사람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

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CD 제작·배포에 관해서 학생들이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대책을 세웠는데 전국에 있는 고 3 학생들의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서 대학에 넘겨주면 실제로 대학에서 필요한 학생들은 많은 대학이 1만 명, 적은 대학은 1000명도 안 될 것입니다. 나머지 수십만 명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아무 필요도 없이 그 대학이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을 반드시 개선시켜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학이 필요로 하는 입학 지원생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나머지 필요 없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까지 왜 갖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정보들이 유출되었을 때 사회적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악용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장치를 했어야 마땅했고 다행히 임시방편으로 각 대학들이 각 시·도에 와서 가져가게 되어 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薛勳 委員 그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시대에 살고 있는데 컴퓨터라는 것이 무한복제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계속 만들어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A대학에서 2000명 지원생분만 받아 갔다고 하더라도 2000명 것을 복사해서 돌리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컴퓨터 사회가 갖고 있는 맹점인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정리하자면 옛날처럼 종이로 된 학생기록부를 받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개인의 정보를 유출 안 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정보가 유출이 안 되는 방법으로는 종이 이상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CD 배포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교육부가 대처한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렇다 하더라도 NEIS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NEIS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했습니까? 부총리가 보시기에는 전교조 쪽이 만족하는 입장까지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가 있습니다.

○薛勳 委員 어쨌든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쪽에서 나온 결론을 보시고, 무리하게 하면 결국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교육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다소 주장을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대화로서 문제를 풀려는 자세를 부총리께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능시험 관련해서는 출제위원 선정 그리고 검증과정, 출제문제를 둘러싼 논란, 시험 사후관련 등등이 있는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한 부분도 있고 교육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도하는 일인데 교육부는 구조적으로 이 문제에서 소외되어 있는 입장에서 국민이 이것은 교육부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책임추궁을 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 구조 문제에서, 이를테면 교육부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무총리 산하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해서, 물론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교육부총리가 평가원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교육문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휘와 그리고 그 지휘에 따른 책임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산하로 들어와야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휘와 감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수능을 실시하게 될 때는 그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교육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

를 해결하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부 내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수능 문제를 놓고 볼 때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에 출입하는 기자들과 대화를 하십시오.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라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출입기자들도 정확히 몰라서 잘못된 기사를 쓰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때그때 기민하게 교육부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처했다라면 이런 혼란이 훨씬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교육과정평가원에 모든 대처안을 세울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적극 대처를 못 해서 생겨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등등으로 볼 때 교육과정평가원의 위치를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한나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수능시험 파동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薛勳 위원님께서서는 교육부를 상당히 이해하는 입장에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이런 일이 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절대 나지 말았어야 될 사태가 벌어졌는데 문제는 사후관리, 즉 처리하는 실력에 대해 문책하고 싶습니다.

이번의 복수정답 시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좀더 신속하고 신중하게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증폭된 이후에야 상황에 대처하는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는 계속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과 비슷한 일이 작년 말고 그전에도 났었습니다. 난이도 조절을 잘 못해서 2년 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벌어졌고 또 방금薛勳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업무 장악의 책임성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총수가 부총리 아닙니까? 그래서 부총리입니다. 이것에 대한 직접 관할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고 다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부총리의 권한을 넓혀 놓았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위상도 올려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의 복수정답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부가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언어영역 17번 문제를 포함해서 이번 수능시험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20여 개의 문제들은 이미 출제위원 및 3인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재채점 불필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영역 17번 문제가 복수정답 시비를 불러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460명의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복수정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수능 난이도 조절 하나 못하는 우리 교육당국이 아닌지 염려를 했었는데 또 이번의 사태에서는 문제관리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출제위원 추천심사위원회의 출제위원 검증과정, 절차가 좀더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초빙교수 P씨를 보면 입시사이트의 학원강사 전력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고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출제위원 추천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명목상으로만 운영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추천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또는 출제위원의 검증작업, 책임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되에도 불구하고 마련해 놓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추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강력하게 책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 특정대학 출신들이 많다, 여러 번 나온 사람이 또 나왔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일이 두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로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출제위원장의 책임도 물어야 될 것 아

닙니까? 그런데 물을 수가 없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민간인이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제도도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능시험 관리에 있어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철저한 시험관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 제재 등을 명료하게 규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이것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또 관련자 문책으로 끝나는 상황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또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등의, 예를 들어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문제가 났을 때는 이것을 전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도 한 쪽에 설치해 놓는 등의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제기합니다.

이번에 수능시험 복수정답으로 인해 혼란이 올 텐데 학생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고 교육부의 처리가 어떻게 원만하게 능률적으로 잘 되느냐에 따라서 조용해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그리고 교육부총리께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책방안을 세워놓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면 부총리의 답을 받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CD제작·배포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방안을 변경해서 대학별로 지원하는 학생의 전산자료만 추출해서 활용하도록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교조와는 그렇게 대화가 안 됩니까, 그렇게 설득을 못합니까? 방금 똑같은 질의가 있었지만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께서는 NEIS로 시작해서 NEIS로 끝나게 생겼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럴만한 일인가, 느낌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사실 NEIS

문제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일종의 수단인 결가지 문제인데 이런 결가지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거의 대부분인 것처럼 보이는 사태도 사태이지만 저도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현재 전교조와의 접촉에 의하면 정보화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각종 방안들이 NEIS 체제에서부터 NEIS를 약간 수정에서 하는 새로운 NEIS 체제에 이르기까지 논의 구도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전교조도 그 논의 구도 속에서 계속해서 대안들을 제출하고 있으니 그런 점에서는 지난봄보다는 훨씬 진일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견이 완전하게 좁혀져 있는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하여튼 NEIS 문제를 포함해서 대학입시제도, 특히 수능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 몇 가지가 바뀌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수능시험을 2, 3회 복수로 실시해서 평균을 낸다든지 아니면 제일 자신 있게 본 점수를 쓴다든지 해서 해당 대학 대입전형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그다음 수능시험도 토플식인 문제은행식으로 해서 가령 5년에 한 번씩 문제를 바꾸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번과 같은 복수정답 사태는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수능시험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위해 두 달씩 갇혀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서 얻은 정보를 또 나와서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못 하도록 어떤 법을 만들어서 더 강화한다든가 또 출제위원이 어떤 문제를 냈을 때는 그와 유사한 학과에 있는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검증하는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자기가 쓴 참고서에서 나온 문제인지 아닌지를 알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도로써 보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인데도 교육부가 교육과정평가원은 관리감독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방치해 버린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방치하지는 않았습디다마는 어쨌든 수능에 관한 모든 절차를 평가원에 위임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기가 힘듭니다.

○김정숙 위원 이따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을 두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산업대학을 지금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산업대학을 일반대학과 똑같이 해 달라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돈이 훨씬 더 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돈도 더 들지만 일단 산업대학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우리나라 교육체제가……

○김정숙 위원 차별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차이점이 뭐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기준정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계획도 산업대학은 산업대학대로 전문대학은 전문대학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산업대학 측의 말씀을 들으면 손해만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에 산업대학을 만들 당시 산업대학으로서의 기능과 차별성은 어디로 가버리고 일반대학이 다 그 혜택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산업대학은 이익은 하나도 없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고유권한은 일반대학에 다 뺏겼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일반대학과 똑같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씀도 이해를 다 합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지방대학육성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산업대학을 없앨 것인가 둘 것인가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어떤 의원님은 국공립대학의 자율화에 관한 법안을 내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한 패키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고등교육의 틀을 바꾸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문제라고 보고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급식에 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다 좋으신 의견인데 어떤 법안은 이미 정부에서 다 끝내서 실시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중에서 식재료 구입비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미 다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자격강화, 감독체계가 확립되어야 됩니다. 또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자격강화, 감독체계도 확립해야 됩니다. 또 학교 내 급식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 평가체제도 있어야 됩니다.

가령 주방시설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식자재도 어떤 물품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런 기준들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식자재도 검수하고 위탁업체도 감독할 수 있고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 종합방안을 읽어봤는데 그런 것들이 법안으로 되어서 발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 급식에 관련된 법안이 한 7개 쯤 올라와 있다는데 왜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는 법안, 예를 들어 최재승 의원 법안에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왜 그것은 이번에 상정이 안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급식도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종합방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급식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李基雨 이사장님, 아무리 정부 관련기관이라고 해도 남의 집 고유명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딸 이름을 순자라고 부르고 싶은데 아니다 영자라고 불러라, 그런데 조합원들이 거기에 다 동의하십니까?

○大韓敎員共濟會理事長 李基雨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재수생들의 수능성적 결과를 보면 인문계는 재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27점이 더 높고 자연계는 46점이 더 높습니다. 이제 공교육은 날로 무너져가고 없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런데 작년보다 차가 줄어든 것은 알고 계십니까? 격차가 조금 줄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오십보백보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한 것과 이것이 제일 큰 질의입니다.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玄勝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玄勝一 委員 이 자리에서 토의하거나 질의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환경이 이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부총리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부터 법안소위에서 많은 수의 법률을 다루게 되는데 각 법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법안을 보면 찬성 의원수가 과반수가 넘게 서명을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은 정부에 비해 공정성이 덜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는 정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사형수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불편부당한 위치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과 정의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확고한 태도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입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수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수능시험은 1회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SAT는 재학 중에 2학년 이상만 되면 언제든 시험을 칠 수 있고 또 졸업한 후에도 칠 수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을 딱 한번 보도록 하는 것 또 재수를 해서 보도록 하는 것, 이렇게 너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한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문제의 난이도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 번 시험을 치게 하면 지난번 시험의 150점과 이번 시험의 150점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제한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SAT의 경우처럼 절대점으로 하지 않고 퍼센티지로 하면 안 됩니까?

물론 전문가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SAT의 경우에는 퍼센티지로 하거든요. 그것은 난이도와 관계없습니다. 전체 응시자 중에서 취득한 점수가 97%에 해당한다, 그러면 97점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시험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황우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우여 위원 오늘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날이지만 수능시험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서 저도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이 아주 불합리해요. 제 주변에서도 이번에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원래 불합리하고 모험과 우연이 가득한 인생을 사는 것도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시간을 거쳐 왔습니다마는 돌이켜 볼 때 꽃같이 아름답고 참 소중한 시기를 아이들이 그렇게 보내게 하는 것이 계속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게다가 수능시험을 계기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비인간적이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험을 여러 번 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한 번에 결론 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회 이상으로 해서 최고 점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긴장을 한다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에, 그 실수로 인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시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최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의 실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을 활용하는 시험으로 개념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에서 높이뛰기를 할 때도 몇 번의 기회를 줘서 그 중에 최고 점수를 그 사람의 실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한 번으로 제한해서 실수를 했을 때도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이 제도가 제가 볼 때는 좀 비인간적인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도의 취지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번에 수능시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사람은 많고 기회는 적어서 흠집을 내서 사람을 탈락시키는 식으로 많은 것을 해 왔어요. 아닌 게 아니라 몇백 년 동안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인물을 아끼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재주를 아끼고 여러 번 기회를 줘서라도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점을 사회에 기여하고 그 사람 일생을 결정짓도록 해야 합니다.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시험의 철학을 가지고 할 때 학생들이 그 시험을 응시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야지 한 번 시험 망쳤다고 자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인식을 주는 시험은 우리가 좀 바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환경이나 분위기 문제인데 장애인 문제 또는 쥐가 나와서 시험을 망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런 환경도 학생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들도 시험을 여러 번 봄으로써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요. 이틀 정도 나누어서 볼 수 있지 않는가, 지금 몇 시간 보지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의 10시간 가까이 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긴장한 학생들이 하루 종일 보게 되면 기력이 약한 학생도 있을 텐데……

저도 고등고시도 보고 많은 시험을 봤습니다마는 중대한 시험이거나 장시간을 요할 때는 적절히 나누어서 인간적인 시험을 보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인간적인 대우를 해 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을 국가에서 존중하고 살려내려고 한다, 학생들의 좋은 점을 이끌어내려는 것이지 떨어뜨리고 망치려는 시험이 아니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인데 지난번에 수능난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여전히 국무총리 산하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결위에서 총리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부로 하루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엄연한 집행기구이기 때문에 교육부로 다시 이관하셔서 교육부에서 철저히 감독하시고 전적인 책임까지도 지는 형태로 해야지 감독업무는 총리실에 있고 여러 가지 위탁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교육부에서 함으로 해서 엇박자가 나는 제도적인 모순을 이번에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수정답이라든지 출제위원의 추천과정과 심사과정이 납득할 수 없도록 소홀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차제에 이 점을 분명히 하시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 학생들이 수능을 무서워하고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좌절하거

나 심각한 인생의 충격을 받는 시험이 되어 있다는 점과 감독과 수행기능을 교육부로 옮겨야 된다는 두 가지를 강력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아까 여쭙보려다가 못 했는데 대학 얘기입니다. 아까 薛勳 위원께서도 두어 군데 대학 얘기를 하셨는데 국감보고서에도 있습니다 마는 덕성여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얘기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재임용을 했고 덕성재단 이사장의 봉급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서 평균 수준으로 다운시키도록 행정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외대도 그렇고 18개 대학이 거의 다 그렇지만 몇 군데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오면서 뺀 대학들, 저는 이런 표현을 감히 씁니다. 학교를 뺀 것입니다.

정상화되면 빨리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덕성여대와 경인여대인데 잘못이 있다면 오랫동안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지요. 제가 그 대학의 설립자라면 억울해서 화병 나 죽어버렸을 것 같아요.

학교를 뺀 것만 사유가 아니라고요. 이사장의 리더십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학교를 뺀 것만 사유라는 것은 형사적인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정말 학교를 뺀 것만하다는 정도의 죄를 범했을 경우여야 되는데 이사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비민주적이다, 독선적이라는 이유들로 문제가 되어서 임시이사체제로 들어가서 지금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저는 학교 측에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임기가 다 되고 난 뒤에는 될 수 있으면 임시이사체제로 가더라도 원래 이사진들의 의사를 듣고 학교설립자 측의 대표라도 넣어주고 아니면 거기에서 추천하는 인물이라도 넣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더니 안 했더라고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경인

여대는 설립자 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김정숙 위원 거기 말고 덕성여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덕성여대도 설립자 측의 얘기를 듣고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김정숙 위원 제가 덕성여대 측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교육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教育人的資源部大學支援局長 張基元 지금 설립자와 조카 두 분의 관계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닙니까?

○教育人的資源部大學支援局長 張基元 두 분 사이에 너무 양보 없이……

○김정숙 위원 제 얘기는 누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설립했으면 애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다시 넣으라는 얘기도 아니라고요. 먼발치에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인물들이라도 협의해 가면서 바꿔줘야지 학교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덕성여대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경인여대도 임시이사 파견할 때의 이유가 사라졌어요. 해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 오해를 받았던 부분도 전부 해결되었고 그 당시 고발했던 교수들이 전부 2년 이상 형사선고를 받았습니다.

원인이 없어졌으면 빨리 원상복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교육부에 물어보니까 교수협의회에서 가만히 안 있는다, 또 임시이사들이 빨리 빨리 해결하려는 자세는 안 보이고 몇 년씩 시간을 끌고 있는데 학교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구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요. 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만 있느냐고요. 아니라고 몇 번 설명을 하셨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학교에 잘못이 없으면 빨리 돌려주세요. 정상화 작업을 서두르면 가령 경인여대만 해도 교수가 70여 명 되는데 절반 정도가 그때 당시에 동참했던 교수들이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새로 뽑은 교수들이에요. 새로 뽑은 35명의 교수들은 그 당시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런데 6명이 직접적으로 벌을 받고 국가로부터 재판을 받았는데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보여 주시고 부총리께서는 내년 8월까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것은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당겨서 이번 방학 중까지 정상화시켜 주라는 건의를 합니다.

제가 경인여대 설립자라면 아마 화병이 났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설립자의 리더십 스타일을 압니다.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뺏길 만한 사유가 아니거든요. 또 재단으로 돈을 옮겨놓았다, 개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설립자가 이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자격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옮겨만 놓은 것인데 이 문제로 해서 학교를 빼앗아버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榮卓 薛勳 위원님.

○薛勳 委員 교육의 현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를 뺏겼다고 표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뺏겼지요.

○薛勳 委員 학교가 물건입니까?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는 것이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다운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무리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薛勳 委員 덕성여대 건에 대해서는 덕성여대가 왜 그렇게 심한 분규를 겪었고 몸살을 앓았는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하신 말씀은 하지 않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았습니다.

○薛勳 委員 전임이사장이 어떻게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덕성여대 학생들이 수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교육부총리, 잘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金敬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敬天 委員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덕여대 사학분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회는 10월 9일 임시이사 파견 대학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사학재단 운영의 문제점과 사학분규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 위

원은 당시 보고받은 대학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법인 정상화 방안 보고자료를 교육부로부터 따로 제출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가 있는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일어난 지금의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 당시의 논의가 무슨 소용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500여 명 학생 전원의 유급 우려가 있는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있었던 동덕여대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내용과 사후조치 및 사태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동덕여대를 감사해 보니까 굉장한 교비유용과 법적인 하자들이 발견되어서 이사장과 총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고 대학관계자 등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법적으로 교육부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덕여대에서 총장이 나가지 않고 이사장이 나가지 않으니까 다시 삭발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학원을 정상화하라는 계고조치를 내리는 일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고 학원 정상화를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敬天 委員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은 황우여 의원께서 대표질의하신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사서교사 1급 자격기준을 신설해서 사서교사를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계획에 따른 각급 학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서교사 1급을 신설하여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할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비해서 1, 2급의 세분화가 없는 사서교사의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서교사 1급을 신설하는 경우 다른 비교과교사와의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여 끊임없는 법 개정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비교과 담당교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재

정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저희들은 사서교사를 1, 2급으로 나누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때문에 이 기회에 교사들을 전부 정리해서 뭔가 통일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金敬天 委員 다음은 玄勝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해외 수출 등 세계무역의 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에서 정부가 이미 서명한 세계무역규범인 WTO 정부조달협정과 배치되어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법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일부는 WTO체제에 거슬러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법 없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金敬天 委員 다음은 崔榮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학교급식 형태를 직영급식으로 의무화하고 학교급식 전담직원 대신 영양교사 배치를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발생한 상당수의 학교급식 관련 식중독사고가 위탁급식업체였는데 식중독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이들의 부도덕한 사업 운영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그렇습니다.

○金敬天 委員 직영급식으로 의무 전환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위탁급식이라고 하더라도 식중독사고가 적고 질 좋은 학교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음을 감안하여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탁급식의 경우 정부의 급식시설투자 보조 등 위탁급식업체의 비리 원인을 제거하는 제도적 보완과 정책 마련

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직영이 식중독사고가 적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나라의 급식체제를 직영으로 의무화할 수는 없습니다.

위탁을 할 수는 있도록 장치는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위탁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감시체제라든가 관리체제를 만들어 두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金敬天 委員 본 위원도 그런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내용인데 교육기본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 등 기존 법령에서 입법취지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이 교육현장에서 차별금지에 관한 구체적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면에서 개정 실익이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검입하고 있는 여성위원회에서 전원이 동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의결한 일이 있음을 알려드렸는데 알고 계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金敬天 委員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金敬天 委員 다음은 영재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개정안이 내용적으로는 현행법과 커다란 차이가 없으나 기술적으로는 대폭 개정이므로 공청회의 절차적 필요성과 현행법의 실질적 시행이 2002년 11월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으로 사실상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교육부가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교육부가 강구하고 있는 제도적 개선책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금 부산과학교등학교를 비롯해서 영재학교를 교육부가 지정하고 있는데 영재학교가 자칫 잘못하면 입시기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학생들

이 과학이나 수학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재학교의 학생모집을 교육감이 하면 너무나 일방적이기 때문에 영재학교 학교장이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라든가 그리고 영재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교육부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같이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다음은 윤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교육감이 궐위되거나 구급상태에 있는 경우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기간 중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감의 선거 출마 시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사실 교육감 선거의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안한 법률 이외에 무엇이 가장 문제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부총리님께서 한마디만 간단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교육감 선거가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큼니다. 교사들을 한 줄로 세우는,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제도와 교육자치에 관해서는 교육부 차원이 아닌 정부혁신위원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나온 법안은 우선 필요한 부분이고 교육감 선거와 자치제도에 관한 부분은 내년 하반기 때 정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것입니다.

○**金敬天 委員** 엄청난 부정, 돈 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선이 아니라 간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것도 여기저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직선을 하는 것이 교육행정을 바로잡는 길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다수 있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있습

니다.

○**金敬天 委員** 부총리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교육감을 직선으로 할 것이냐 또는 직선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정부혁신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敬天 委員**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직선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어쨌든 지금의 방법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金敬天 委員**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권과 교육행정이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교육행정과 교육입법을 다루고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한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은 尹榮卓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대학의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내국세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도권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에 교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지방대학의 재정난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양여금법과 유사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등교육예산은 보통교육의 10%인 2.7조 원에 불과하여 지방대학 뿐만 아니라 일부 수도권 대학도 재정난이 심각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을 배제하고 지방대학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도 고등교육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공감합니다.

지금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金敬天 委員**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산업대학을 4년제 일반대학으로 일괄적으로 전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산업대학에서도 일반대학과 같이 모집하고 또 일반대학에서도 산업대학과 같이 모집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산업대학에 관련한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1992년부터 한국의 산업대학에 해당하는 폴리테크닉과 일반대학을 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폴리테크닉과 일반대학에 대한 법적 구분이 없는 등 산업대학을 일반대학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근본 이유는 산업대학에 대한 법적, 행정적 차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산업대학종합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2003년 초에 구성하여 지금까지 10여 차례의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대학에 대한 법적, 행정적 차별을 완화하고 산업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 결과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마는……

○**金敬天 委員**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물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산업대학을 처음 만들 때의 취지가 흐려져서 지금은 산업대학이 일반대학과 구별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 산업대학을 원래 취지에 맞도록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지방대학육성계획 속에 산업대학이 일반대학과 다른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敬天 委員** 애초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했지만 사실 운영상 문제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18개 대학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金敬天 委員** 그런데 이미 일반대학으로 전환된 산업대학도 몇 개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전환시켰는지요?

○**教育人的資源部大學支援局長 張基元** 제가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도 사립 산업대학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충족시키면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원이 대폭 감축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학의 재정난이 우려되기 때문에, 만약 현재의 정원을 감축시키지 않고 일반대학으로 전환한다면 대부분의 사립 산업대학이 전환을 하겠습니까마는 정원 감축을 감수하고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사립 산업대학의 경우는 판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의 경우는 일반대학의 설립·운영 규정 요건을 충족시켜 주게 되면 정원을 줄여야 되고 줄일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따로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요건만 갖추어지면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러니까 산업대학의 교원 확보율이 일반대학보다 낮습니다. 일반대학처럼 확보율을 높이려면 선생을 더 뽑든지 학생을 줄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대학으로 바서는 오히려 불리하지요.

○**金敬天 委員** 불리한데도 산업대학 총·학장들이 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거든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국립 산업대학과 사립 산업대학의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산업대학 내부 교수들의 이해관계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산업대학을 푸는 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金敬天 委員** 어쨌든 잘 검토해서 대학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원래 목적이 손상되지 않는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이 정부 제출로 나왔는데 주요골자는 독학에 의한 학사취득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하되 시험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의 실시를 의무화하자는 것이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金敬天 委員** 정부의 입법취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응시자격 정지기간과 관련해서 현행법상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

정시험, 학위취득 종합시험 등 4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바 3년 동안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학업의 연속성에 어려움이 있어 중도에 학사취득을 포기할 우려가 크고 또 본 입법의 취지가 평생교육 진흥임을 감안해서 제재기간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시험 부정을 저질렀을 때 대개 3년간 정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金敬天 委員 어쨌든 교육의 근본목적이 권면해서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달 위원 한나라당 박창달 위원입니다.

尹德弘 부총리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NEIS 문제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시고 또 금년 안에 마무리를 잘하시나 싶었는데 연말에 와서 수능시험으로 인해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처음에 NEIS 문제로 곤욕을 치르다가 조금 회복되었을 때 제가 교육부 식구들에게尹德弘 부총리를 중심으로 정말 뚝뚝 뭉쳐서 잘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2004년 수능시험 문제가 전적으로 교육부의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 모든 책임은 교육부가 다 덮어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과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능시험과 관련해서는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맨 먼저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견이 있는데 우리가 10월 9일 국정감사 시 16개 임시이사 파견 대학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6개 임시이사 파견 대학 중 금년도에 임시이사가 반 이상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임위 할 때 그런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시 모든 교육위원들이 같이 검토했기 때문에 연말을 기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니까 그 과정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물 몇 가지 법안이 있는데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다음 상임위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김정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정부 측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워낙 많은 질의를 하셔서……

○김정숙 위원 급식에 관한 것은 급식담당 공무원과 제가 더 대화를 하고 보고를 들을 테니까 부총리께서는 수능에 관계되는 것만, 앞으로 어떻게 고치시겠다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금 2005년도 수능은 현행 체제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학생들에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원과 출제위원을 선정하는 방법, 출제경향을 통합형에서 학력고사형으로 바꾸는 방법, 발표를 할 때 점수제가 아닌 등급제로 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2006년, 2007년에는 현행과 같은 수능 제도는 유지하되 현격한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7차 교육과정의 의해서 공부한 학생들이 고3이 되니까 그때는 입학시험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500명의 사람들이 한 달간 간혀서 문제를 만들고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되는 이런 시험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을 만들어서 우선 내년 3월까지 2005년도 것을 정리해 놓고 2006년도, 2007년도는 2004년 8월까지 계획표를 만들고 2008년도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대입시험제도에서부터 고등학교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결하는 통로가 비정상적이니까 이런 것을 전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께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언제쯤 종합방안이 나오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일단 계획은 12월 12일에 비공개 보고를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 방으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정상화 종합방안……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비공개이고 대통령의 결심도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니까……

○김정숙 위원 대통령의 결심을 가지고 교육정책이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교육에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가도 아니시고……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것이 아니고……

○김정숙 위원 공개를 하고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해야지 왜 비공개로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하시려고 그래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별별 아이디어들이 있으니까 일단 비공개 회의를 하고……

○김정숙 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하면 좋은데 한 건 하려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우왕좌왕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심사숙고해서 몇 년간 치밀하게 연구해서 정답을 내놓으면 좋은데 이 정부가 어디 그러니까? 한건주의 아니에요? 인기영합주의, 이것 하면 관심 좀 받겠다 하면 퍽 발표하는 통에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비공개 회의를 한 연후에 다시 공청회 같은 것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도 이후 우리나라 대학생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수능이 문제가 되니까 수능을 자격고사제도로 전환하자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자격고사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수능을 시작한 지 10여 년 정도 되는데 당분간은 이대로 보완을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보완하고, 아까 제가 건의한 내용 중에 수능을 두 세 번 봐서 평균을 내면 어떠냐, 표준점수화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냈지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학에 더 많은 자율성을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은 수능을 몇 %만 반영하겠다, 이렇게 대학마다 우수한 인

재들을 뽑기 위한 자율성을 점점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면서 저는 수능은 없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수능점수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가 전체에서 몇 등 정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점수를 갖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 학원으로 갑니다. 학원선생이 진학지도로 하는 거예요. 학원이 진학지도 컨설팅까지 맡아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가지요.

그래서 진학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교사를 빨리 고등학교에 두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생각이 없으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가 알기로 지금 전국 각 학교에 진학지도교사가 있고 진학지도교사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아주 정확합니다. 학원보다 더 정확합니다. 제가 서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에서는 진학지도교사협의회가 이 데이터를 만들어 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각 학교마다 진학지도 전문교사들이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럼요, 있지요.

○김정숙 위원 그런데 왜 학부모들은 자꾸 학원으로 갑니까? 이것을 빨리 불식시켜 줄 정책을 더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원에서 공교육이 해야 될 진학상담까지 다 뺏어간 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몇 년 있으면 7차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선택과목이 늘어나 버리잖아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많이 늘지요.

○김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실력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모의고사를 쳐 봅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데 12월 5일에도 시험을 쳤습니다. 내년엔 시행될 수능시험을 지금 쳐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김정숙 위원 지금 고2 학생들이 시험을 친다는 말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고2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은행 식의 시스템을 도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문제은행 식은 1~2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은행 식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계속 난이도 조절하고 출제위원 갖고 시비가 붙는 한 대입 정책, 수능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안정성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장기적으로 쓰려면 지금 빨리 문제은행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할 생각도 안 하고 해마다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애가 타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급식문제는 교육부가 종합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 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좀더 실정법의 틀에 맞추어서 정부안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것을 다 담기에는 너무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안으로 종합적인 법을 하나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급식에 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기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 질의내용 속에 자세한 것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미생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식중독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생물 검사는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어떤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은 그런 것이 전부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급식환경부터 고쳐 나가야 돼요. 급식환경도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정해야 하고, 위탁업자나 식자재에 관한 기준 등을 다 마련해서 그런 것들이…… 급식 관계자가 들려주는 종합방안에는 다 있던데 이것을 빨리 법률안으로 만들어서 정부 안으로 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식중독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조금 조금씩 의원입법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난번에

우리 부에서 보고한 급식종합대책이 2004년 8월 인가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좋은 것이 많더라고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그것이 확정되면 당연히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金敬天 委員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두 번째는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영세사학에 관한 문제이고 세 번째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것입니다.

세 가지 다 제가 발의한 법안인데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다시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법률안은 모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玄勝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오는 12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전체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李在五 위원, 金敬天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
(참 조)

【제안설명서】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

2003. 4. 16.

국회의원 김 정 숙

존경하는 윤영탁 위원장님과 동료 선배위원 여

러분.

한나라당 교육위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초·중등학생들은 과중한 학습부담과 학교 주변폭력 그리고 불안정한 가정 및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고민이 자살이나 집단폭력, 성범죄 등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저희 의원실에서 최근 2년간 자살했던 초·중등학생 245명의 상담기록을 조사해본 결과 가정문제, 질병문제 등 학생들의 개인적 고민을 제대로 파악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나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사례가 많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교사의 따뜻한 격려와 행정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은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기존 교사 중 상담교사자격을 가진 분들도 일반적 상담교육만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지도가 어렵고, 또한 상담교사들이 일반 수업까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상담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상담교사를 두는 것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되어있고(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이 교사들에게만 허용(동법 제21조제2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담을 받기도 어렵고, 상담교사의 수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는 학원폭력과 학습능력을 비관한 자살 및 학생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상담교사배치의 의무화'와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 완화 및 전문화'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에 꼭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

2003. 11. 24.

국회의원 황 우 여

존경하는 윤영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입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사서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 232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를 점차 증원 배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도서관활성화사업에 따라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5년간 약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금년에는 600여억의 예산이 학교현장에 투입되어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자료확충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공동 협력으로 학교도서관에서 교과 수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서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다른 교사와는 달리 유독 사서교사만이 1, 2급의 구분이 없이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교사는 물론 같은 비 교과교사인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도 '1급', '2급'으로 그 자격기준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그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저의 제안설명의 취지에 따라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

2003. 11. 24.

국회의원 **崔 榮 熙**

존경하는 운영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학교급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발전적인 학교급식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금년 3월 말 서울시내 13개 중·고등학교에서 위탁급식으로 인해 1557명의 학생이 동시에 집단식중독에 감염되었는가 하면,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비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매년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적 고뇌에 있습니다.

위탁급식의 경우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불가피한 현실로 인해 직영급식에 비해 좋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서 위탁급식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학교급식에 위탁급식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동시에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학교와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직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적향상과 성장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고려할 때, 정부의 아낌없는 예산지원을 수반한 직영급식의 확대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大韓教員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

2003. 10. 20.

국회의원 **李 在 五**

서울 은평구 출신 이재오 의원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법의 적용대상에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법의 적용대상과 제명이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대한교원공제회법’에서 직원을 포함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바꾸려는 것이며, 이와 아울러 현행법 중 제도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몇 가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법 제11조제2호의 ‘각종 복리후생시설의 운영’을 ‘각종 복리후생사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회원의 적극적인 복지확대를 위한 것으로 저금리시대에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법 제11조의2에 ‘자료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은, 급여 지급사유 발생이나 변동 시 회원의 고의나 과실로 미지급되거나 과지급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관계기관의 자료협조를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법 제14조의 임원 중 감사의 정수를 ‘2인’에서 ‘2인이내’로 바꾸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감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법에는 2인으로 고정되어 있는 모순을 없애고 사학연금공단, 군인공제회 등 다른 유관기관의 관련규정과 마찬가지로 ‘2인이내’로 하여 탄력성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법 제15조의 임원선출에 있어서 ‘임면’을 ‘임명’으로 바꾸는 것은,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운영위원회 동의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작성 당시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적으로 법 제7조의2를 개정하여 회원가입 자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령상 사립대학 부속병원의 직원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1991년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이 시행되면서 국립대학병원이 별도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 임직원은 지금까지 가입을 못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법안제명의 개정뿐만 아니라 공제회가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재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2003. 10. 27.

국회의원 **李 在 五**

서울 은평구 출신 이재오 의원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은 2001년 1월에 제정되고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불과 2년도 경과되지 않았으나, 법 제정 당시 시급한 법제정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법체계나 내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전문개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기본법 제19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히 영재교육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 3조에 영재교육진흥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국가와 함께 규정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신설하고, 정책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할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상에는 영재학교의 교원자격은 초중등교육법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영재교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영재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초빙하여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0조에 영재교육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만이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다섯째, 현행법 제10조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지정, 배치’에 관한 규정은 영재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와는 달리 강제적으로 학교를 지정배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렸고, 나머지 조항들은 현행법 그대로이거나, 문구수정이나 자구정리가 필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듬어 보완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영재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영재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동 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中改正法律案

2003. 8. 14.

국회의원 **윤 경 식**

안녕하십니까.

청주 흥덕출신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윤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장 권한대행규정이 있어 기관장이 쉼위·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는 경우에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기관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등의 경우에도 옥중결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개정안의 기본취지는 교육감이 쉼위되거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에 찬동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中改正法律案

2003. 11. 24.

국회의원 **황 우 여**

황우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1항에서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본 규정이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직무전념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며 그것이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95헌마53)”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지위와 권한을 자기의 선거운동에 남용 또는 악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다른 입후보 희망자가 가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입·활용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당선을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법제정이나 법집행·행정집행을 할 소지가 있고, 그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교육공무원은 후보등록 전까지 사퇴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확립과 부정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자치법 제61조 교육감의 자격을 보면, 다른 선거와 달리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라는 자격제한을 두고 있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의 대부분이긴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교육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겸직이 제한된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는 자,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근무하는 자 등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를 감안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유지하고 그 사퇴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함께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단 교육감 후보 사퇴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교육감 선거일이 공선법의 4대선거와 달리 법에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공선법의 보궐선거 시 후보자등록 전일 사퇴하는 것을 감안하여 교육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기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저의 제안 설명의 취지에 따라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중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안

2003. 11. 24.

국회의원 황우여

교육위원회 황우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50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우리국민이 온 힘을 합쳐 다 함께 열심히 살아 온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원동력이 된 것은 무엇보다 교육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1세기는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무역 전쟁을 치루고 있으므로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국가경쟁력이 높은 선진국의 교육개혁을 살펴보면 대학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립대학을 법인화로 추진하고, 프랑스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평가제도를 부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49개국 중 한단계 상승한 27위이나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는 41위(지난해 47위)로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국가의 행정조직 일부로 자리 매김하여 예산·조직 및 인사 등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책임 경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의 기능인 교육·연구·봉사의 유연한 전개에 제약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교육제도에 획기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학교육투자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관한 것입니다.

국립대학의 재정운영 실태를 보면 국가의 일반회계, 학부형이 지원하는 기성회계, 그리고 각종 연구비회계, 또 발전기금 회계 등 다양한 회계를

대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고 일반회계 예산의 경직성과 대학자체 기성회계의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 대학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특성 있는 대학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립대학의 조직·정원·인사관리에 있어서 대폭적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즉 사무국 등 공통조직을 제외한 대학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대학재량에 맡기고, 계약제 교사 등 공무원 이외의 교직원 등을 대학 자체재원으로 임용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허용하며, 과장급(4급 공무원) 총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둘째, 국가예산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 및 시설비는 현행제도에 따라 국가에서 교수 정원 또는 투자사업을 고려하여 지원하되, 운영비는 금년도 지원액에서 학생납입금 등 자체수입을 공제한 현년도 지원액 수준인 내국세의 0.3%를 총액으로 계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현행 예산회계 관계법령의 기본적인 체제는 유지하면서 국고지원 예산과 대학자체 기성회계를 통합하여 대학자율과 책임 하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학회계」 제도를 도입하며, 학생납입금 등 대학의 일반수입은 대학의 자체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되, 국가예산은 성질별로만 편성하여 대학회계로 진출하도록 하고, 국가지원 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한 이·전용 권한도 대학의 장에게 전면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대학회계의 예산은 당해 대학의 총장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확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대학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납입금을 재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교육목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도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재정운영상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결산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대학별 중·장기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행·재정 지원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

결하기 위하여 교직원 대표·학부모 대표 및 회계사 등으로 구성하는 대학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립대학 기성회계를 국가회계에 통합하는 것은 재정통합 측면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끝으로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를 신설(2001.28)하여 “학교회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본다면 초·중등학교의 “학교회계”보다 본래적으로 법에서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대학부터 “대학회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3. 11. 12.

국회의원 尹 榮 卓

존경하는 교육위원 여러분.

운영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증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사교육비 증대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개인과의 교습자들의 불법·고액과외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과의 교습자들의 교습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장소로 한정하고, 교습장소 및 학습자수를 신고사항으로 하며, 불법 개인과의 교습자들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 교원 및 고등교원의 과외교습금지규정과 벌칙규정이 법률의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인과의교습자의 성격과 교습

소와의 구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개인과의 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규정과 벌칙규정을 법률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자의 사회적·법률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습장소와 학습자수를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에 포함시키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벌 단계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목적과 내용을 담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안

2003. 11. 6.

국회의원 尹榮卓

존경하는 교육위원 여러분.
윤영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균형 잡힌 국토개발을 끊임 없이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학생부족으로 인한 재정악화로 이어져 지방대학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대학 교육의 황폐가 가시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위기를 막고 지방대학육성을 통한 지방활성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 특별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대학 경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재원은 당해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정의 교부는 실적평가, 특성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구체적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시기를 2005년도로 늦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21세기 신지식사회에서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특히 지방대학의 경쟁력 회복 없이 국가경쟁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이 통과되어 지방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出席委員(13人)

權 哲 賢	金 敬 天	김 정 숙	박 창 달
薛 勳	윤 경 식	尹 榮 卓	이 규 택
李 在 五	정 몽 준	趙 富 英	玄 勝 一
황 우 여			

○委員아닌出席議員(1人)

朴 源 弘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柳 忠 鉉
전 문 위 원	鄭 順 泳

○政府參席者

교육인적자원부	
부 총 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尹 德 弘
차 관	徐 凡 錫
차 관 보	鄭 奇 彦
기 획 관 리 실 장	金 永 植
평 생 직 업 교 육 국 장	白 鍾 冕
대 학 지 원 국 장	張 基 元
교 원 정 책 심 의 관	李 英 萬
교 육 자 치 심 의 관	鄭 永 宣

○其他參席者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李 基 雨
------------	-------

【報告事項】

○議案回附

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안(윤영탁 의원 대표발의)

(11월6일 윤영탁·정동채·송석찬·정갑윤·천용택·이협·김덕룡·정균환·김진재·이상희·김경천·이창복 최재승·송광호·함석재·오장섭·서상섭·김용갑·조배숙·박상

회 · 윤경식 · 양승부 · 김성호 · 박명환 · 이주영 · 권철현 · 박헌기 · 이용삼 · 이상득 · 김무성 · 정문화 · 최병렬 · 김영선 · 장재식 · 김효석 · 한화갑 · 김덕규 · 박상규 · 정철기 · 강봉균 · 김찬우 · 정병국 · 박창달 · 전갑길 · 최용규 · 박진 · 심규철 · 이운성 · 김학송 · 김락기 · 이인제 · 김근태 · 김원기 · 이해구 · 이방호 · 이정일 · 이재오 · 이연숙 · 심재권 · 조부영 · 정의화 · 엄호성 · 김원웅 · 강재섭 · 권오을 · 박승국 · 최명헌 · 김홍일 · 김옥두 · 유재건 · 홍재형 · 김홍신 · 정우택 · 정진석 · 김학원 · 손희정 · 주진우 · 이낙연 · 이강래 · 김정숙 · 권태망 · 박재욱 · 유한열 · 강신성일 · 이원형 · 이인기 · 서병수 · 김택기 · 정장선 · 박인상 · 강인섭 · 안상수 · 고진부 · 박종완 · 홍문종 · 신경식 · 김정부 · 김일윤 · 허태열 · 안경률 · 장성원 · 유재규 · 양정규 · 김덕배 · 정범구 · 김경재 · 백승홍 · 이훈평 · 최연희 · 박근혜 · 강숙자 · 장태완 · 송영길 · 이강두 · 하순봉 · 박희태 · 정형근 · 김희선 · 김태홍 · 윤여준 · 정동영 · 남궁석 · 이호웅 · 김명섭 · 김종호 · 정몽준 · 강창희 · 김상현 · 목요상 · 안동선 · 김형오 · 현경대 · 박세환 · 이병석 · 김성조 · 전용학 · 박주선 · 유홍수 · 이상배 · 김광원 · 구종태 · 정세균 · 김종하 · 김용학 · 민봉기 · 정창화 · 박시균 · 김동욱 · 권기술 · 윤두환 · 김종필 · 송영진 · 이완구 · 김성순 · 안상현 · 김윤식 · 문석호 · 신영균 · 임인배 · 안택수 · 장영달 · 서정화 · 이양희 · 신영국 · 배기선 · 송훈석 · 홍사덕 · 최영희 · 김만제 · 조재환 · 배기운 · 강운태 · 이재선 · 박병석 · 이원성 · 김운용 · 김병호 · 이희규 · 김태식 · 김기춘 · 박종웅 · 도종이 · 한충수 · 김충조 · 김영환 · 나오연 · 최병국 · 정대철 · 김용환 · 조용규 · 윤한도 · 김기재 · 이경재 · 조한천 · 황창주 · 윤철상 의원 발의)

11월7일 회부됨

初 · 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11월7일 황우여 · 권철현 · 김정숙 · 박재욱 · 박창달 · 설훈 · 엄호성 · 윤한도 · 이경재 · 이재오 의원 발의)

11월8일 회부됨

初 · 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김경천 · 권철현 · 권태망 · 박재욱 · 엄호성 · 윤경식 · 이경재 · 이규택 · 이재오 · 전용학 · 주진우 · 황우여 의원 발의)

11월11일 회부됨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윤영탁 의원 발의)

(11월12일 윤영탁 의원 외 9인 발의)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

(11월12일 김경천 · 권철현 · 김일윤 · 박창달 · 백승홍 · 윤영탁 · 이규택 · 이원형 · 이재오 · 최영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13일 회부됨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

(11월19일 김경천 · 김상현 · 김홍신 · 김황식 · 손희정 · 이양희 · 이훈평 · 장성원 · 정범구 · 조배숙 · 최명헌 · 최영희 의원 발의)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

(11월19일 김경천 · 김상현 · 김홍신 · 김황식 · 손희정 · 이양희 · 이훈평 · 장성원 · 정범구 · 조배숙 · 최명헌 · 최영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20일 회부됨

少年院法中改正法律案

(11월8일 정부 제출)

11월10일, 관련위원회로서 소관위원회의 심사사결결일 전일까지 의견제시기간을 정하여 회부됨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11월22일 정부 제출)

11월24일, 관련위원회로서 소관위원회의 심사사결결일 전일까지 의견제시기간을 정하여 회부됨

○請願回附

동대문구명문고유치에관한청원

(2003년11월2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2동 264-289 동대문구명문고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 전종득 외 3809인으로부터 김희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21일 회부됨